

한국복지패널

Korea Welfare Panel Study

사용자 지침서 2024

한국복지패널 18차년도 조사자료
Korean Welfare Panel Study

User's Guide

KoWePS
Korea Welfare Panel Study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학교사회복지연구소
홈페이지 : www.koweps.re.kr:442

목 차

제1장 조사개요	1
제1절 조사 목적	1
제2절 한국복지패널의 특징과 개선을 위한 노력	1
제3절 한국복지패널조사 추진경과 및 18차 조사 수행결과	4
제2장 표본설계 및 가중치	9
제1절 모집단과 표본추출	9
제2절 가중치 조정	10
제3절 가중치 극단값 조정	12
제3장 설문 구성 및 내용	14
제1절 설문 구성	14
제2절 설문 내용	21
제4장 데이터 설명	23
제1절 결측치 처리 및 자료의 결합 방법	23
제2절 가구용 데이터	32
1. 가구일반사항	32
2. 건강 및 의료 A	34
3. 경제활동상태	36
4. 사회보험, 퇴직(연금), 개인연금 가입	40
5. 의료 B	44
6. 주거	46
7. 생활비(소비지출), 주관적 최저생계비	49
8. 소득	50
9. 부채, 이자	56

10. 재산	57
11. 생활여건	58
12. 국민기초생활보장	59
13. 근로(자녀)장려세제	61
14. 가구의 복지서비스 이용	62
15. 노인가구의 복지서비스 이용	65
16. 아동가구의 복지서비스 이용	66
17. 장애인가구의 복지서비스 이용	69
18. 가족	70
제3절 가구원용 데이터	71
1. 사회보험, 개인연금, 퇴직금(퇴직보험) 수급	71
2. 근로	73
3. 생활실태·만족 및 의식	76
4. 사회적 환경에 대한 의식	77
5. 생활습관, 가족관계 및 정신건강	79
6. 교육	86
7. 개인사	87
제4절 장애인 부가조사	89
1. 조사표본	89
2. 기중치 및 기본정보	90
3. (공통1) 장애 원인 및 상황	92
4. (공통2) 일상 생활	93
5. (개별1) 미취학 아동 설문(만0세-초등학교 입학 이전)	96
6. (개별2) 학생 설문(초등학생-고등학생 설문)	98
7. (개별3) 성인(만 18-65세 미만) 설문	100
8. (개별4) 어르신(만 65세 이상) 설문	101

제1장 조사개요

제1절 조사 목적

- 외환위기 이후 빈곤층, 근로빈곤층(working poor), 차상위층(near poor)의 가구형태, 소득 수준, 취업상태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 계층의 규모 및 생활실태 변화를 동태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정책형성에 기여함과 동시에 정책지원에 따른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함.
- 연령, 소득계층, 경제활동상태 등에 따른 다양한 인구집단별로 생활실태와 복지욕구 등을 역동적으로 파악하고 정책집행의 효과성을 평가함으로써 새로운 정책의 형성과 제도적 개선 등 정책 환류에 기여하고자 함.

제2절 한국복지패널의 특징과 개선을 위한 노력

1. 한국복지패널의 특징

- 첫째, 국내에서 수행 중인 가구단위 패널조사 중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한국의료패널조사 다음으로 규모가 큰 패널조사임.
- 2023년 18차 한국복지패널 조사는 조사 대상이었던 8,008가구 중 총 7,654가구가 조사 완료되었음
 - － 한국복지패널의 최초 원표본 가구규모는 7,072가구로 시작하여, 이후 조금씩 감소하기는 하였으나 18차 조사 완료된 원표본가구는 총 3,529가구에 이르고 있음.

- 또한, 2012년 7차 조사에서는 원표본 가구 유지율의 감소에 대비하기 위하여 사전 검토 및 예비조사를 거쳐 신규 표본 1,800가구를 추가하였음. 2023년 18차 조사에서는 이들 신규 표본가구 중 1,281가구를 조사 완료하였음.
 - 2022년 17차 조사에서도 두 번째 신규표본을 추가하였음. 2021년 신규패널 추가를 위한 7,000가구 표본 조사를 거쳐, 2022년 신규표본 2,012가구를 구축하였음. 2023년 18차 조사에서는 이들 신규 표본가구 중 1,917가구를 조사 완료하였음.
 - 기존 분가 가구 및 2023년에 발생한 추가 분가가구는 927가구임.
 - 조사에서 표본수가 많다는 것은 통계학적으로는 표본오차가 작아지고, 현실적으로는 세부 단위까지의 다양한 분석이 가능한 조사임을 의미함.
- 둘째, 한국복지패널은 전국을 대표하는 패널조사임.
 - 즉, 지역적으로는 ‘제주도’, 가구유형으로는 ‘농어가’를 포함하고 있어 패널조사로서는 드물게 전국적인 대표성을 지니고 있음.
 - 셋째, 한국복지패널은 신뢰할 수 있고 편리하게 활용 가능한 통계자료를 일관성 있게 생산하고 있는 패널조사임.
 - 넷째, 저소득층 연구에 적합한 패널임.
 - 표본추출 시 중위소득 60%미만 저소득층에 전체 표본의 약 50%를 할당하였기 때문에 국내 패널조사 중에서 가장 많은 저소득층 가구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저소득층 대상 정책이나 빈곤 연구에 적합함.
 - 마지막으로, 학제 간 연구가 가능한 패널조사임.
 -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패널 자료를 바탕으로 광범위한 사회과학 영역의 학자들이 다양한 연구 및 분석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다차원적인 조사 내용을 포함한 조사표를 개발
 - 다양한 영역의 조사내용을 풍부하게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학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 걸쳐 학제 간 연구의 장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음.

2. 한국복지패널의 개선 노력

□ 조사 및 데이터 공개 시점

- 한국복지패널의 기존 조사는 조사 수행시점이 종합소득세 신고시점(5월) 무렵에 시작되어 전년도에 생활실태 등 다양한 내용을 조사하기 때문에 회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음.
- 이에 2012년 7차 조사부터는 2월, 2013년 8차 조사는 1월에 조사를 시작하였으며, 2014년 9차 조사부터 2019년 14차 조사까지는 3월부터 조사를 시작하여 상반기에 완료하고 있음.
 - 다만, 2020년 15차 조사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조사시작 시점을 6월 5일부터 9월 24일로 변경하여 실시하였음.
 - 통계청은 코로나19 감염병이 확산되던 시기인 2020년 3월에 조사를 실시하지 않도록 권고하였고, 확산세가 둔화되는 시기였던 6월에 조사를 시작하였으며, 중앙 및 지자체의 감염병 예방수칙을 엄격하게 준수하였음.
 - 2021년 16차 조사는 코로나19 감염병이 지속하는 가운데 수행되었던 15차 조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예년 조사 시작 시점인 3월에 조사를 시작하였고, 2023년 18차 조사도 3월부터 조사를 시작하여 상반기에 조사를 완료하였음.

□ 패널 가구의 유지 및 관리

- 18년 이상 조사가 진행됨에 따라 패널가구의 피로도 심화와 이탈을 예방하고 가구의 조사 참여 유지를 독려하기 위한 방안을 매년 기획하여 수행하고 있음.
 - 조사 응답 가구에 대한 답례의 현실화, 가구를 대상으로 패널자료의 활용 사례 지속 홍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체 조사인력풀의 지속 운영 및 관리 등을 수행하고 있음.

□ 한국복지패널 자체 홈페이지 운영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홈페이지와 별도로 한국복지패널만의 자체 홈페이지를 운영하여, 패널가구로부터의 의견 수렴 및 거주지 이전 정보를 파악하는 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데이터 이용자를 대상으로는 데이터 이용 및 문의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음.

□ 이용자의 데이터 활용 관련 편의 제공

- 매해 정기적으로 데이터설명회를 개최하고, 패널 분석방법에 대한 특강을 학술대회의 한 부분으로 기획·운영하고 있음.
- 기본적인 데이터 마시지 작업의 수고를 덜 수 있도록 가구+가구원+부가조사 데이터의 차수별 머지데이터를 공개하는 한편, 11차 자료 공개 시점부터는 종단분석용 결합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음.
 - 차수별 결합데이터(가구+가구원+부가조사)의 생성과정은 데이터 구조의 이해와 관련이 깊기 때문에, 본 유저가이드에서 다루고 있음.
 - 매해 3월 말~ 4월 초에 새로운 차수 데이터와 함께 홈페이지에 공개.

제3절 한국복지패널조사 추진경과 및 18차 조사 수행결과

1. 표본의 추가

- 2006년 1차 원표본 가구규모는 7,072가구로 출발하였으며, 2012년 7차 신규 표본가구 1,800가구, 2022년 17차 신규 표본가구 2,012가구를 포함하여 18차 조사대상 가구규모는 전체 8,008가구임.
 - 17차 조사 완료된 원표본 4,552가구 + 7차 신규 표본가구 중 17차 조사 완료된 1,301가구 + 17차 신규 표본 가구 2,012가구 + 18차 신규 분가가구 143가구
 - 이 중 조사 완료된 가구는 7,654가구로 95.58%의 조사완료율을 보임.
 - 조사완료 가구 중 원표본 가구는 3,529가구로 최초 7,072 가구 대비 원표본 가구 유지율은 49.90%로 나타남.
- 2012년 7차 조사에서는 본 조사 외에도 신규 표본가구 추가를 위한 예비조사를 실시함.
 - 최초 원표본 가구 7,072가구로 시작한 한국복지패널의 원표본 가구는 여전히 5,000가구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여타 조사에 비해 원표본 규모가 크다는 장점을 유지하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이처럼 원표본 가구 유지율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향후 신규 표본가구 추가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신규 표본가구 추가를 위한 예비조사를 2012년 하반기에 수행하여

1,80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완료하였음.

- 일반 가구와 저소득 가구의 비율을 1차 조사와 동일한 비율로 잡아 저소득 가구를 과대 표집하였고, 지역별 표본 배분 또한 1차 조사 당시의 지역별 가구의 비율과 유사하게 하여 패널의 동질성을 최대한 유지하였음.

□ 2022년 17차 조사에서는 본 조사 외에도 신규 표본가구 추가를 위한 구축 조사를 실시함.

- 최초 원표본 가구 7,072가구로 시작한 한국복지패널의 원표본 가구는 여전히 5,000가구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여타 조사에 비해 원표본 규모가 크다는 장점을 유지하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이처럼 원표본 가구 유지율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향후 신규 표본가구 추가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신규 표본가구 추가를 위한 예비조사를 2021년 하반기에 수행하여 7,00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완료하였고, 예비조사를 통하여 일반 가구와 저소득 가구의 비율을 1차 조사와 동일한 비율(저소득: 1,000가구, 일반: 1,000가구)로 잡아 저소득 가구를 과대 표집하여 2022년 본조사를 마치 이후에 2,012가구¹⁾를 대상으로 조사를 완료하였음.
- 7차 추가 조사와 마찬가지로 1차 조사의 설계와 유사하게 하여 패널의 동질성을 최대한 유지하였음.

2. 조사 추진경과

□ 제18차 한국복지패널조사 추진경과

- 조사인원 : 14개 팀과 1인 체계 6인
- 총 48명(지도원 20명, 조사원 28명)
- 조사지역 : 17개 시도
- 조사일정 : 2월 27일 ~ 6월 20일 (총 114일)

1) 목표 가구 수는 2,000가구였으나, 조사 결과 2,012가구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었다.

3. 조사 수행결과

□ 18차 조사대상 가구

○ 18차 조사 예정 가구

- 원표본 가구는 3,664가구이고, 2~17차 조사기간 중 분가로 인해 발생한 분가가구는 888가구이며, 7차부터 신규패널 가구로 들어온 1,800가구(17차 완료: 1,301가구)와 17차부터 신규패널 가구로 들어온 2,012가구가 포함됨.

○ 18차 총 조사대상 가구

- 18차 조사과정에서 발생한 신규 분가가구는 143가구로, 이를 포함한 18차 총 조사대상 가구는 8,008가구에 이룸.

□ 18차 조사완료가구

○ 18차 원표본 가구 유지율 및 조사완료

- 원표본 가구 유지율은 최초 7,072가구 대비 49.90%이며, 전년도(51.81%) 대비 18차 원표본 가구 유지율의 감소폭은 1.91%p임.
- 원표본 가구 조사완료율은 전년도 원표본 3,664가구 대비 3,529가구 완료로 96.32%임.

○ 18차 신규표본가구 조사완료

- 7차 신규표본 1,301가구 중 조사가 완료된 가구는 1,281가구임.
- 17차 신규표본 2,012가구 중 조사가 완료된 가구는 1,917가구임.

○ 18차 총 조사완료

- 18차 조사 완료된 총 표본가구는 7,654가구로, 18차 총 조사대상 8,008가구 대비 조사완료율은 95.58%임.
- 18차 조사 미완료 가구는 총 354가구임(원표본 135가구, 분가 가구가 219가구).
 - 그 사유별은 조사거부가 236가구로 가장 많았으며, 사망 59가구, 요양소 입소 및 이민 등 기타가 43가구, 합가 11가구, 추적 불가 5가구로 나타남.

□ 한국복지패널 원표본 가구 및 신규표본 유지율 변화 추이

구분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9차	10차	11차	12차	13차	14차	15차	16차	17차	18차 총 조사 대상	18차 조사 완료	
원 패 널	원 표 본 가 구	원표본 가구 수	7,072	6,511	6,128	5,935	5,675	5,336	5,271	5,104	4,896	4,760	4,560 (13) ¹⁾	4,398 (11) ²⁾	4,266 (10) ³⁾	4,124 (15) ⁴⁾	3,865	3,816 (51) ⁵⁾	3,664 (5) ⁵⁾	18차 분가 가구 포함 총 조사대상 8,008가구 ↑	3,529
		원표본 유지율	100.00%	92.07%	86.65%	83.92%	80.25%	75.45%	74.53%	72.17%	69.23%	67.31%	64.48%	62.19%	60.32%	58.31%	54.65%	53.96%	51.81%		49.90%
		전년 대비 원표본 감소가구	-	561	383	193	260	339	65	167	208	136	200	162	132	142	259	49	152		135
		전년 대비 원표본 감소폭	-	7.93%p	5.42%p	2.73%p	3.67%p	4.80%p	0.92%p	2.36%p	2.94%p	1.92%p	2.83%p	2.29%p	1.87%p	2.01%p	3.66%p	0.69%p	2.15%p		1.91%p
		전년 대비 원표본 감소율	-	7.93%	5.88%	3.15%	4.38%	5.97%	1.22%	3.17%	4.08%	2.78%	4.20%	3.55%	3.00%	3.33%	6.28%	1.27%	3.98%		3.68%
	분 가 가 구	기존 분가가구(2차~전년도)	-	-	60	167	249	327	383	433	481	517	556	596	662	703 (1) ⁴⁾	713 (1) ³⁾	761 (9) ⁵⁾	785 (2) ⁵⁾	848	
		추가 분가가구(당해 연도)	-	69	126	105	110	72	78	82	61	66	73	87	69	65	76	77	103	79	
		전체 분가가구	-	69	186	272	359	399	461	515	542	583	629	683	731	768	789	838	888	927	
		전 체	7,072	6,580	6,314	6,207	6,034	5,735	5,732	5,619	5,438	5,343	5,189	5,081	4,997	4,892	4,654	4,654	4,552	4,456	
	신 규 1 6)	원표본 가구 수	-	-	-	-	-	-	1,800	1,690	1,594	1,534	1,478	1,426 (1) ²⁾	1,392 (2) ³⁾	1,343 (3) ⁴⁾	1,281	1,239 (6) ⁵⁾	1,188 (4) ⁵⁾	2,012가구 (17차 신규 ⁷⁾ 2,012가구 + 18차 분가 가구 조사대상 143가구	1,159
기존 분가가구		-	-	-	-	-	-	-	-	3	16	34	55	70	78	85	84 (2) ⁵⁾	104 (3) ⁵⁾	109		
추가 분가가구		-	-	-	-	-	-	-	3	13	21	22	19	15	18	9	19	9	13		
전체 분가가구		-	-	-	-	-	-	-	3	16	37	56	74	85	96	94	103	113	122		
전 체		-	-	-	-	-	-	1,800	1,693	1,610	1,571	1,534	1,500	1,477	1,439	1,375	1,342	1,301	1,281		

구분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9차	10차	11차	12차	13차	14차	15차	16차	17차	18차 총 조사 대상	18차 조사 완료	
신 규 2 가 가 구	원표본 가구 수	-	-	-	-	-	-	-	-	-	-	-	-	-	-	-	-	2,012		1,908	
	기존 분가가구	-	-	-	-	-	-	-	-	-	-	-	-	-	-	-	-	-			-
	추가 분가가구	-	-	-	-	-	-	-	-	-	-	-	-	-	-	-	-	-			9
	전체 분가가구	-	-	-	-	-	-	-	-	-	-	-	-	-	-	-	-	-			9
	전 체	-	-	-	-	-	-	-	-	-	-	-	-	-	-	-	-	-		2,012	
조사완료 총 표본가구		7,072	6,580	6,314	6,207	6,034	5,735	5,732	7,312	7,048	6,914	6,723	6,581	6,474	6,331	6,029	5,996	7,865		7,654	

주: 1) 8차 탈락 가구 복원, 2) 9차 탈락 가구 복원, 3) 10차 탈락 가구 복원,
4) 11차 탈락 가구 복원, 5) 15차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 조사 거부 가구 복원,
6) 2012년 추가 패널 의미, 7) 2022년 추가 패널 의미.

제2장 표본설계 및 가중치

제1 절 모집단과 표본추출

□ 모집단

- Koweps의 목표 모집단은 2022년 현재 전국에 거주하는 가구임.
- Koweps의 조사 모집단은 2005년 인구센서스 90%조사구(섬·특수시설 조사구 제외).

□ 추출틀

- Koweps의 추출틀은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90% 자료에서 섬·특수시설 조사구를 제외한 전체 23만여 개 조사구임.

〈표 2-1〉 추출틀의 시도별 구성

시도	조사구수	가구수	시도	조사구수	가구수
계	237,682	14,260,103	강원	7,871	462,601
서울	49,440	3,005,559	충북	7,499	450,291
부산	18,165	1,074,589	충남	9,869	588,216
대구	12,128	738,953	전북	9,275	544,563
인천	12,713	737,976	전남	9,243	544,741
광주	6,793	416,208	경북	14,025	830,597
대전	7,268	434,710	경남	15,857	940,076
울산	5,053	308,537	제주	2,680	160,554
경기	49,803	3,021,932			

- 1차 조사로부터 517개 조사구(24,711가구)를 추출하여 가구소득을 조사한 다음 그 중에서 446개 조사구(7,000가구)를 최종 표본으로 추출하였음.

□ 표본추출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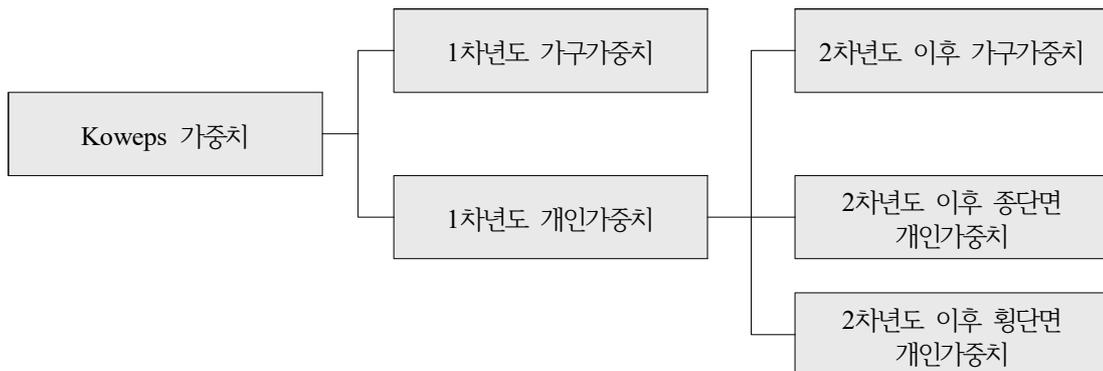
- 1단계: 인구센서스 90% 자료로부터 517개 조사구를 표본으로 추출하여 가구의 소득 및 가구원의 경제활동 상태 등을 조사함.
- 2단계: 1단계 조사 자료로부터 일반 가구와 저소득층 가구를 각각 3,500가구씩 총 7,000가구를 표본가구로 추출하였음.
- 층화이중추출법을 이용하여 최종 패널 가구를 선정하였음.

제2절 가중치 조정

1. 가중치 부여 체계

- 지나치게 큰 가중치 값들은 추정량의 분산을 크게 만들어 추정의 정확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이러한 가중치의 과도한 변동을 줄이고자 극단 가중치 조정을 하였음.
- 가구가중치는 횡단면과 종단면 가중치를 구분하지 않고 단일가중치를 부여하며, 개인가중치만 횡단면과 종단면 가중치를 부여하였음.

〈표 2-2〉 Koweps의 가중치 부여체계



- 한국복지패널의 가중치는 우선 1차년도에서 부여된 개인 가중치를 이용하여 2차년도 이후 해당 가구의 개인조사표에 응답한 가구원에 대해 가중치 조정을 수행하였음.
- 1차년도에서 부여된 각 개인의 가중치는 해당 가구의 가구가중치와 동일함. 이때 가구원 조사표를 작성한 15세 이상 가구원에 대해서만 개인가중치가 부여되었음.

□ 가중치 부여 절차

- 먼저 개인가중치 산정 과정은 17차년도 종단면 가중치를 기본 가중치로 고려하여 1차년도 원패널 표본 여부를 판정함. 이때 18차년도에 원 패널가구에 진입한 신규 가구원은 18차년도에서 가구원 평균 가중치를 부여함.
- 즉, 1차년도 패널가구원으로서 군 입대 및 해외여행 등으로 조사 당시 응답하지 않았던 가구원에 대해서는 가구의 평균 가중치를 부여하고, 결혼 등의 사유로 원 패널가구에 진입한 가구원도 가구의 평균 가중치를 부여함.
- 18차년도에 원패널 가구로부터 분가한 가구원의 경우 원래의 가구원 가중치를 부여받지만, 분가한 후 결혼 등의 사유로 신규로 진입한 신규가구의 신규가구원은 0의 가중치를 부여함(2~18차 동일).
- 앞에서 언급한 17차년도 탈락가구원이 18차년도에 재진입인 경우 18차년도의 평균(지역*가구원수) 가중치를 부여함.
- 2차 이후 원가구에 신규로 진입한 가구원은 가구원의 평균 가중치를 부여하고, 신규 출생 이동은 가구원+1의 평균 가중치를 적용함.
- 개인 종단면 가중치는 1단계로 로지스틱회귀를 이용하여 응답확률을 추정하고, 2단계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개인별 변동 상황에 따라 가중치를 조정함. 다음, 마지막으로 3단계에서는 지역 및 응답자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2022년 인구 추계 값을 이용하여 사후 조정을 실시하였음.
- 한편 개인 횡단면 가중치는 18차년도 종단면 가중치를 기본가중치로 하여 1단계에서 18차년도 응답자들의 응답확률을 추정하고, 2단계에서는 18차년도 종단면 가중치 값이 0인 가중치에 대해 가구별 평균가중치를 적용하고, 3단계에서는 지역 및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2022년 추계인구수에 따라 사후 조정하였음.

2. 가중치 변수 및 제공 형태

□ 일반사항

- Koweps의 데이터파일은 총 3개로 구성되는데, 각 데이터파일은 SPSS, SAS, STATA 파일로 제공함.
- 18차년도의 가중치변수는 통합가중치(1차 원표본 7,072가구와 7차 추가 원표본 1,800가구와 17차 추가 원표본 2,012가구)와 7차 추가 포함 통합가중치(1차 원표본 7,072가구와 7차 추가 원표본 1,800가구)와 원표본가중치(1차 원표본 7,072가구) 3개로 나누어 제공함.
- 18차년도의 가중치변수는 원표본 가중치와 통합표본1 및 통합표본2 가중치로 구분되고, 18차년도 가구 가중치와 18차년도 가구원 가중치로 제공되고, 가구원 가중치는 다시 종단면 가중치와 횡단면 가중치로 나누어 제공함.

〈표 2-3〉 18차년도 가중치변수

내용		변수명	
원표본	가구 가중치	H18_WG	H18_WS
	개인횡단면 가중치	P18_WGC	P18_WSC
	개인종단면 가중치	P18_WGL	P18_WSL
통합표본1 (원표본+7차 추가)	가구 가중치	H18_WG_ALL	H18_WS_ALL
	개인횡단면 가중치	P18_WGC_ALL	P18_WSC_ALL
	개인종단면 가중치	P18_WGL_ALL	P18_WSL_ALL
통합표본2 (원표본+7차 추가 +17차 추가)	가구 가중치	H18_WG_N_ALL	H18_WS_N_ALL
	개인횡단면 가중치	P18_WGC_N_ALL	P18_WSC_N_ALL
	개인종단면 가중치	P18_WGL_N_ALL	P18_WSL_N_ALL

제3절 가중치 극단값 조정

- 지나치게 큰 가중치 값들은 추정량의 분산을 크게 만들어 추정의 정확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이러한 가중치의 과도한 변동을 줄이고자 극단 가중치 조정을 함.
- 가구 가중치 극단값 조정 단계
 - 레이킹을 통한 사후조정 후 지나치게 큰 가중치들 (상위 1%)를 찾아서 절단 (trimming)한다.

- 절단값을 제외한 나머지 값을 극단 관측치가 속한 지역*가구원수 내의 관측치들에게 동일하게 배분한다.

□ 개인(횡단, 종단) 가중치 극단값 조정 단계

- 레이킹을 통한 사후조정 후 지나치게 큰 가중치들(상위 1%)을 찾아서 절단(trimming)한다.
- 절단값을 제외한 나머지 값을 극단 관측치가 속한 지역*성별*연령 내의 관측치들에 동일하게 배분한다.

제3장 설문 구성 및 내용

제1절 설문 구성

- 1~18차 모두 크게 가구용, 가구원용, 부가조사, 세 가지의 조사표로 구성됨.
 - 다만, 2차 이후에는 전년도 조사가 이루어진 가구(원)의 경우 원가구(원)용, 해당년도 분리(신규진입)가 이루어진 가구(원)의 경우 신규가구(원)용이 작성된다는 점이 1차년도 다름.
 - 즉, 조사표의 구성은 [그림 3-1]과 같이 2차년도 이후에는 총 5종의 조사표로 구성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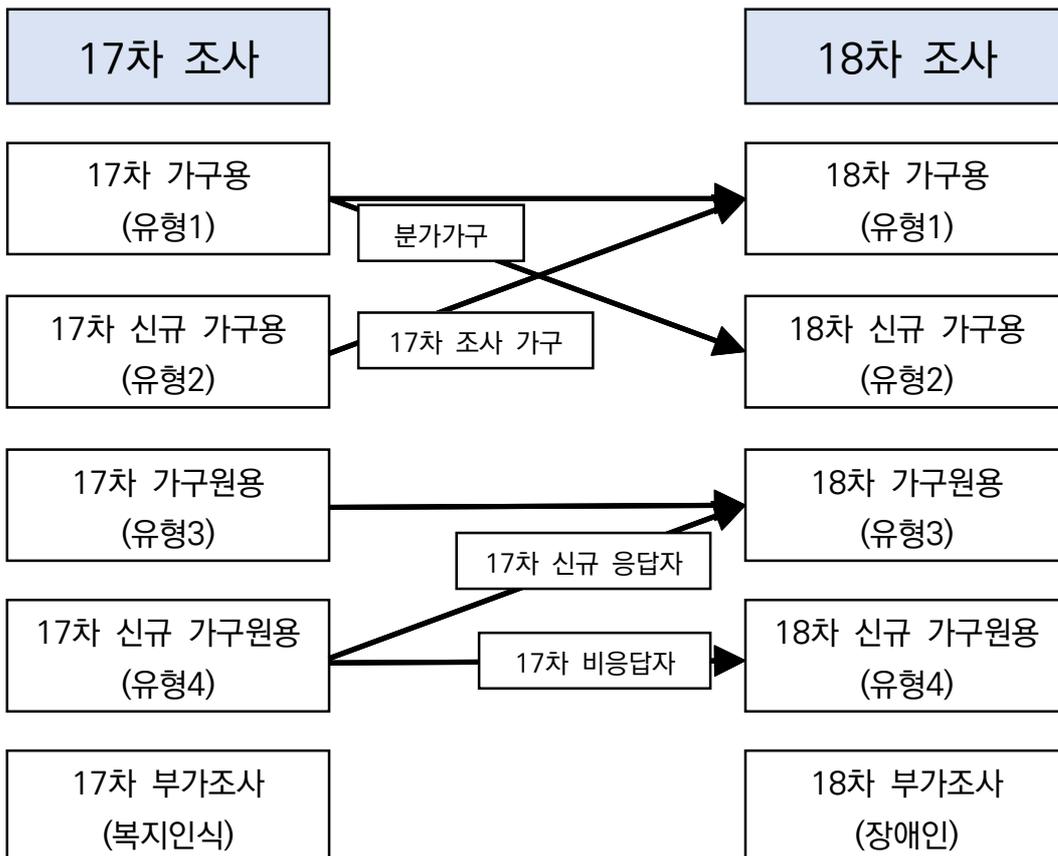
- 부가조사는 각 년도마다 별도의 주제(Special Issue)를 개발하여 일회성-혹은 경우에 따라 몇 년에 한 번씩 반복적으로 조사됨.
 - 1차/4차/7차/10차/13차/16차년도에는 아동 부가조사, 2차/5차/8차/11차/14차/17차년도에는 복지인식 부가조사, 3차/6차/9차/12차/15차/18차년도에는 장애인 부가조사가 이루어짐.

- ※ 17차 조사부터는 조사표의 주요항목과 변경 항목을 별도의 엑셀파일로 제공함.
- ※ 16차 조사부터는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일부 문항을 삭제하여 조사하였던 15차와 달리 모든 문항을 복원하여 조사하였음.

〈표 3-1〉 원·신규 가구 및 가구원의 개념

구분		내용
가구	원가구	전년도 조사당시 조사 완료된 패널가구 (예: 17차년도 조사완료가구 → 18차년도 원가구)
	신규가구	조사 기준 연도(예: 18차년도 조사기준 연도 2022년) 9월 30일 이전에 분가, 결혼, 직장, 학업, 위탁, 이혼, 별거 등의 이유로 원가구(가구주 기준)로부터 분리된 가구 ※ 조사 기준 연도 10월 1일 이후에 분리된 가구원은 원가구에 속하는 가구원(9개월 이상 생계를 함께한 가구원)이므로, 신규가구가 아니라 원가구의 가구원으로 조사
가구원	원가구원	전년도 가구원 조사 응답 가구원 (예: 17차년도 가구원조사 응답가구원 → 18차년도 원가구원)
	신규가구원	전년도 가구원 조사에 응답하지 않은 가구원이면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 1) 조사 기준 연도에 만 15세가 된 가구원이면서 중고등학생이 아닌 자 2) 조사 기준 연도 2월에 고등학교를 졸업(중퇴 포함)한 가구원 3) 조사 기준 연도에 원가구 혹은 신규가구에 새로 진입한 가구원

[그림 3-1] 조사표의 구성



1차 / 2006년 조사		
가구용 조사표	가구원용 조사표	부가조사표(아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사대상: 가구주 또는 가구주배우자 조사방법: 가구방문을 통한 직접면접조사 조사기준연도: 2005.1.1~2005.12.31 조사기준시점: 2005.12.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사대상: 만15세 이상 가구원 전체(중고생 제외) 조사방법: 가구방문을 통한 직접면접조사 조사기준연도: 2005.1.1~2005.12.31 조사기준시점: 2005.12.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사대상: 초등학교 4,5,6학년 재학 아동 전체 조사방법: 가구방문 통한 직접면접과 자기기입식 병행 조사기준시점: 조사일 현재

2차 / 2007년 조사		
가구용 조사표(원·신규)	가구원용 조사표(원·신규)	부가조사표(복지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사대상: 가구주 또는 가구주배우자 조사기준연도: 2006.1.1~12.31 조사기준시점: 2006.12.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사대상: <ol style="list-style-type: none"> 만15세이상 가구원 전체(중고생 제외) 2006년 2월에 고등학교 졸업한 가구원 조사기준연도: 2006.1.1~12.31 조사기준시점: 2006.12.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사대상: 부가조사 대상으로 추출된 표본가구의 가구주와 배우자 조사기준시점: 조사일 현재

3차 / 2008년 조사		
가구용 조사표(원·신규)	가구원용 조사표(원·신규)	부가조사표(장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사대상: 가구주 또는 가구주배우자 조사기준연도: 2007.1.1~12.31 조사기준시점: 2007.12.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사대상: <ol style="list-style-type: none"> 만15세이상 가구원 전체(중고생 제외) 2007년 2월에 고등학교 졸업한 가구원 조사기준연도: 2007.1.1~12.31 조사기준시점: 2007.12.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사대상: 장애 유형에 따라 표본으로 선정된 장애인 조사기준시점: 조사일 현재

4차 / 2009년 조사		
가구용 조사표(원·신규)	가구원용 조사표(원·신규)	부가조사표(아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사대상: 가구주 또는 가구주배우자 조사기준연도: 2008.1.1~2008.12.31 조사기준시점: 2008.12.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사대상: <ol style="list-style-type: none"> 만15세이상 가구원 전체(중고생 제외) 2008년 2월에 고등학교 졸업한 가구원 조사기준연도: 2008.1.1~12.31 조사기준시점: 2008.12.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사대상: 1차년도 아동조사 응답자와 응답시점에서 중학교 재학 중인 가구원 조사방법: 가구방문 통한 직접면접과 자기기입식 병행 조사기준시점: 조사일 현재

5차 / 2010년 조사		
가구용 조사표(원·신규)	가구원용 조사표(원·신규)	부가조사표(복지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사대상: 가구주 또는 가구주배우자 조사기준연도: 2009.1.1~12.31 조사기준시점: 2009.12.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사대상: <ol style="list-style-type: none"> 만15세이상 가구원 전체(중고생 제외) 2009년 2월에 고등학교 졸업한 가구원 조사기준연도: 2009.1.1~12.31 조사기준시점: 2009.12.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사대상: 2차년도 복지인식조사 응답자와 신규 부가조사 대상으로 추출된 표본가구의 가구주와 배우자 조사기준시점: 조사일 현재

6차 / 2011년 조사		
가구용 조사표(원·신규)	가구원용 조사표(원·신규)	부가조사표(장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사대상: 가구주 또는 가구주배우자 조사기준연도: 2010.1.1~12.31 조사기준시점: 2010.12.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사대상: <ol style="list-style-type: none"> 만15세이상 가구원 전체(중고생 제외) 2010년 2월에 고등학교 졸업한 가구원 조사기준연도: 2010.1.1~12.31 조사기준시점: 2010.12.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사대상: 3차년도 장애인조사 응답자 조사기준연도: 조사일로부터 지난 1년간 조사기준시점: 조사일 현재

7차 / 2012년 조사		
가구용 조사표(원·신규)	가구원용 조사표(원·신규)	부가조사표(아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사대상: 가구주 또는 가구주배우자 조사기준연도: 2011.1.1~12.31 조사기준시점: 2011.12.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사대상: <ol style="list-style-type: none"> 만15세이상 가구원 전체(중고생 제외) 2011년 2월에 고등학교 졸업한 가구원 조사기준연도: 2011.1.1~12.31 조사기준시점: 2011.12.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사대상: 1차 또는 4차년도 아동조사 응답자 조사방법: 가구방문 통한 직접면접과 자기기입식 병행 조사기준시점: 조사일 현재

8차 / 2013년 조사		
가구용 조사표(원·신규)	가구원용 조사표(원·신규)	부가조사표(복지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사대상: 가구주 또는 가구주배우자 조사기준연도: 2012.1.1~12.31 조사기준시점: 2012.12.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사대상: <ol style="list-style-type: none"> 만15세이상 가구원 전체(중고생 제외) 2012년 2월에 고등학교 졸업한 가구원 조사기준연도: 2012.1.1~12.31 조사기준시점: 2012.12.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사대상: 7차 총 표본가구 중 조사대상으로 추출된 표본가구의 만19세 이상 모든 가구원* 조사기준시점: 조사일 현재

9차 / 2014년 조사		
가구용 조사표(원·신규)	가구원용 조사표(원·신규)	부가조사표(장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대상: 가구주 또는 가구주배우자 • 조사기준연도: 2013.1.1~12.31 • 조사기준시점: 2013.12.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대상: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만15세이상 가구원 전체(중고생 제외) 2) 2013년 2월에 고등학교 졸업한 가구원 • 조사기준연도: 2013.1.1~12.31 • 조사기준시점: 2013.12.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대상: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3차연도 장애인 조사 응답자 2) 8차연도 조사에서 15세 미만 장애인 가구원 전원 • 조사기준시점: 조사일 현재

10차 / 2015년 조사		
가구용 조사표(원·신규)	가구원용 조사표(원·신규)	부가조사표(아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대상: 가구주 또는 가구주배우자 • 조사기준연도: 2014.1.1~12.31 • 조사기준시점: 2014.12.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대상: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만15세이상 가구원 전체(중고생 제외) 2) 2014년 2월에 고등학교 졸업한 가구원 • 조사기준연도: 2014.1.1~12.31 • 조사기준시점: 2014.12.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대상: 10차년도에 초등학교 4,5,6학년 재학 아동 전체 • 조사방법: 가구방문 통한 직접면접과 자기기입식 병행 • 조사기준시점: 조사일 현재

11차 / 2016년 조사		
가구용 조사표(원·신규)	가구원용 조사표(원·신규)	부가조사표(복지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대상: 가구주 또는 가구주배우자 • 조사기준연도: 2015.1.1~12.31 • 조사기준시점: 2015.12.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대상: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만15세이상 가구원 전체(중고생 제외) 2) 2015년 2월에 고등학교 졸업한 가구원 • 조사기준연도: 2015.1.1~12.31 • 조사기준시점: 2015.12.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대상: 8차년도 복지인식조사 응답자 중 10차년도 표본에 포함된 가구원 • 조사기준시점: 조사일 현재

12차 / 2017년 조사		
가구용 조사표(원·신규)	가구원용 조사표(원·신규)	부가조사표(장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대상: 가구주 또는 가구주배우자 • 조사기준연도: 2016.1.1~12.31 • 조사기준시점: 2016.12.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대상: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만15세이상 가구원 전체(중고생 제외) 2) 2016년 2월에 고등학교 졸업한 가구원 • 조사기준연도: 2016.1.1~12.31 • 조사기준시점: 2016.12.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대상: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3차년도 장애인 조사 응답자 2) 11차년도 조사에서 장애인 가구원 전원 • 조사기준시점: 조사일 현재

13차 / 2018년 조사		
가구용 조사표(원·신규)	가구원용 조사표(원·신규)	부가조사표(아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사대상: 가구주 또는 가구주배우자 조사기준연도: 2017.1.1~12.31 조사기준시점: 2017.12.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사대상: <ol style="list-style-type: none"> 만15세 이상 가구원 전체(중고생 제외) 2017년 2월에 고등학교 졸업한 가구원 조사기준연도: 2017.1.1~12.31 조사기준시점: 2017.12.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사대상: 13차년도에 중학교 1,2,3학년 재학 아동 전체 조사기준시점: 조사일 현재
14차 / 2019년 조사		
가구용 조사표(원·신규)	가구원용 조사표(원·신규)	부가조사표(복지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사대상: 가구주 또는 가구주배우자 조사기준연도: 2018.1.1~12.31 조사기준시점: 2018.12.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사대상: <ol style="list-style-type: none"> 만15세 이상 가구원 전체(중고생 제외) 2018년 2월에 고등학교 졸업한 가구원 조사기준연도: 2018.1.1~12.31 조사기준시점: 2018.12.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사대상: <ol style="list-style-type: none"> 11차년도 복지인식 부가조사 응답자 중 13차 조사에 포함된 가구원 13차 기준 만 19~21세에 속하는 가구원 조사기준시점: 조사일 현재
15차 / 2020년 조사		
가구용 조사표(원·신규)	가구원용 조사표(원·신규)	부가조사표(장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사대상: 가구주 또는 가구주배우자 조사기준연도: 2019.1.1~12.31 조사기준시점: 2019.12.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사대상: <ol style="list-style-type: none"> 만15세 이상 가구원 전체(중고생 제외) 2019년 2월에 고등학교 졸업한 가구원 조사기준연도: 2019.1.1~12.31 조사기준시점: 2019.12.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사대상: 14차년도 가구원 조사 완료된 사람 중 장애인 가구원 전원 조사기준시점: 조사일 현재
16차 / 2021년 조사		
가구용 조사표(원·신규)	가구원용 조사표(원·신규)	부가조사표(아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사대상: 가구주 또는 가구주배우자 조사기준연도: 2020.1.1~12.31. 조사기준시점: 2020.12.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사대상: <ol style="list-style-type: none"> 만15세 이상 가구원 전체(중고생 제외) 2020년 2월에 고등학교 졸업한 가구원 조사기준연도: 2020.1.1~12.31 조사기준시점: 2020.12.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사대상: 2021년 3월 기준, 고등학교 1, 2, 3학년에 재학 중인 아동 전체 조사기준시점: 조사일 현재

17차 / 2022년 조사		
가구용 조사표(원·신규)	가구원용 조사표(원·신규)	부가조사표(복지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사대상: 가구주 또는 가구주배우자 조사기준연도: 2021.1.1.~12.31. 조사기준시점: 2021.12.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사대상: <ol style="list-style-type: none"> 만15세 이상 가구원 전체(중고생 제외) 2021년 2월에 고등학교 졸업한 가구원 조사기준연도: 2021.1.1~12.31 조사기준시점: 2021.12.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사대상: 5, 8, 11, 14차 복지인식 부가조사에서 한 번이라도 응답한 만 19세 이상 가구원 조사기준시점: 조사일 현재

18차 / 2023년 조사		
가구용 조사표(원·신규)	가구원용 조사표(원·신규)	부가조사표(장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사대상: 가구주 또는 가구주배우자 조사기준연도: 2022.1.1.~12.31. 조사기준시점: 2022.12.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사대상: <ol style="list-style-type: none"> 만15세 이상 가구원 전체(중고생 제외) 2022년 2월에 고등학교 졸업한 가구원 조사기준연도: 2022.1.1~12.31 조사기준시점: 2022.12.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사대상: 17차연도 가구원 조사 완료된 사람 중 장애인 가구원 전원 조사기준시점: 조사일 현재

* 주: 2차/5차 복지인식 부가조사의 경우 표본이 표본가구 내 모든 가구원이 아니라 가구주와 배우자 중 1명 또는 2명으로 구성되어 있어 대표성 확보에 어려움을 초래함. 이에 따라 8차 복지인식 부가조사에서는 대표성을 확보하고 추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표본설계 방안을 마련함. 7차 전체 표본가구 중 지역별(16개시도)/계층별(저소득, 일반) 확률비례추출법에 따라 추출된 표본가구(2,399가구, 가구원 6,248명) 내 만 19세 이상 모든 가구원(5,05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총 4,185명에 대해 조사가 완료됨.

제2절 설문 내용

〈표 3-2〉 조사영역

조사표 구분		조사영역			
가구용 (유형1,2)	공통조사영역 (1~3차)	I. 가구일반사항 II. 건강 및 의료 A III. 경제활동상태 IV. 사회보험, 퇴직(연)금, 개인연금 가입 V. 의료 B VI. 주거	VII. 생활비 VIII. 소득 IX. 부채, 이자, 주관적 최저생계비 X. 재산 XI. 생활여건 XII. 국민기초생활보장	XIII. 가구의 복지서비스 이용 XIV. 노인가구의 복지서비스 이용 XV. 아동가구의 복지서비스 이용 XVI. 장애인가구의 복지서비스 이용 XVII. 가족	
	4차년도 변경영역	XII-1. 근로장려세제(추가)			
	6차년도 변경영역	XII-2. 희망기움통장(근로소득장려금)(추가)			
	7차년도 변경영역	XII-2. 희망기움통장(근로소득장려금)(삭제) XII-2. 가구의 경제상황 및 복지수준에 대한 인식 및 전망(추가)			
	8차년도 변경영역	XII-2. 가구의 경제상황 및 복지수준에 대한 인식 및 전망(삭제)			
	11차년도 변경영역	XII-1. 국민기초생활보장(맞춤형급여, 2015년 7월 이후 기준)(추가)			
	12차년도 변경영역	XII. 국민기초생활보장(2015년 7월 이전 기준)(삭제)			
가구원용 (유형3,4)	1차년도 조사영역	A. 사회보험, 퇴직금, 개인연금 수급 B. 근로	C. 생활실태·만족 및 의식 D. 사회적 환경에 대한 의식	E. 생활습관, 가족관계 및 정신건강 F. 개인사	
	2차년도 변경영역	F. 개인사(‘유형3:가구원용’에서 삭제, ‘유형4:신규가구원용’에만 포함)			
	3차년도 변경영역	F. 교육(‘유형4:신규가구원용’에 추가)			
부가 조사	아동용 (1,4,7, 10,13, 16차)	1차년도 조사영역	A. 나의 학교생활 B. 나의 생각과 행동	C. 우리 부모님 D. 나의 친구 E. 나와 나의 가족	
		4차년도 변경영역	E. 나와 나의 가족 → F. 나의 건강 및 생활 G. 나의 아르바이트 경험 및 활동(추가) H. 나의 진로(추가)		
		7차년도 변경영역	A. 현재상태(추가)		
	복지인식 (2,5, 8,11, 14, 17차)	2차년도 조사영역	I. 전반적인 사회적·정치적 인식과 태도	II. 복지자원 및 대상범위	
		5차년도 변경영역	III. 정치참여와 성향(추가)		
장애인 (3, 6, 9, 12, 15, 18차)	(공통I) 장애 원인 및 상황 (공통II) 일상생활	(개별I) 미취학 아동 설문 -만0세~초등 입학 이전 (개별II) 학생설문 -초등학생~고등학생	(개별III) 성인설문 -만 18~65세 미만 (개별IV) 어르신설문 -만 65세 이상		

〈표 3-3〉 조사주제별 구성

주제	세부주제	항목 포함 영역
1. 가구원 배경 및 개인사	1) 가구원 일반사항	가구용 I. 가구일반사항 가구원용 F. 교육
	2) 부모세대	가구원용 G. 개인사
	3) 개인사	가구원용 G. 개인사
2. 근로활동	1) 직업이력	가구원용 G. 개인사
	2) 경제활동상태	가구용 III. 경제활동상태 가구원용 B. 근로
	3) 고용지원프로그램	가구원용 B. 근로
3. 경제상황	1) 소득	가구용 VIII. 소득
	2) 지출 및 저축	가구용 VII. 생활비 X. 재산
	3) 재산 및 부채	가구용 IX. 부채 및 이자 X. 재산
	4) 기초생활	가구용 XI. 생활여건
4. 가구여건 (복지욕구)	1) 보육, 교육	가구용 XV. 아동가구의 복지서비스 이용
	2) 건강 및 의료	가구용 II. 건강 및 의료A V. 의료B
	3) 주거	가구용 VI. 주거
	4) 가족관계	가구용 XVII. 가족 가구원용 E. 생활습관, 가족관계 및 정신건강
	5) 기타 가구여건	아동 부가조사(1/4/7/10/13/16차) 장애인 부가조사(3/6/9/12/15/18차)
5. 사회보장 가입 및 수급 현황	1) 사회보험	가구용 IV. 사회보험, 퇴직(연)금, 개인연금 가입 가구원용 A. 사회보험, 퇴직금, 개인연금 수급
	2) 공공부조	가구용 I. 가구일반사항(기초보장수급형태) XII. 국민기초생활보장 XII-1. 근로(자녀)장려세제
	3) 사회복지서비스	가구용 XIII. 가구의 복지서비스 이용 XIV. 노인가구의 복지서비스 이용 XV. 아동가구의 복지서비스 이용 XVI. 장애인가구의 복지서비스 이용 부가조사 장애인 부가조사(3/6/9/12/15/18차)
6. 기타	1) 기타 생활여건 및 사회적 관계망	가구원용 C. 생활실태·만족 및 의식 D. 사회적 환경에 대한 의식
	2) 생활습관 및 정신건강	가구원용 E. 생활습관, 가족관계 및 정신건강
	3) 복지·사회·정치문제 인식	복지인식 부가조사(2/5/8/11/14/17차) 가구원용 D. 사회적 환경에 대한 의식(성역할)

제4장 데이터 설명

제1절 결측치 처리 및 자료의 결합 방법

1. 결측치 처리

【기본 팁】

결측치 처리는 필요시 가구원용과 부가조사 설문에서 미완가구원에 대해서만 이루어진다.

□ 조사결과 미완가구원으로 분류된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로 처리됨.

○ 미완가구원 처리

- 가구원과 부가조사(아동, 복지인식, 장애인) 설문에서 미완사유코드 중 뇌병변장애, 정신지체·발달장애 1,2급(장애정도가 심함), 사망, 우울증, 치매, 금치산자와 같은 기타 범주에 포함되는 가구원은 표지만 작성하고, 그 외의 모든 문항은 조사하지 않았음. 따라서 분석할 때 필요시 제외시키고 분석 할 수 있음.
 - 가구원용 데이터에서 조사가 완료된 가구원만 추출하여 분석하고자 할 경우 최종 조사결과확인(변수명: p18_cp)이라는 변수에서 미완(코드: 2)인 가구원만 뽑아서 삭제시키면 됨.
 - 부가조사 설문 데이터에서 조사가 완료된 데이터만 추출하여 분석하고자 할 경우 최종조사결과확인(변수명: 부가조사명_cp)이라는 변수에서 미완(코드: 2)인 가구원만 뽑아서 삭제시키면 됨.
- ※ 각 부가조사별 변수: 아동(c01, c04, c07, c10, c13, c16), 복지인식(wc02, wc05, wc08, wc11, wc14, wc17), 장애인(da03, da06, da09, da12, da15, da18)

2. 18차년도 자료의 결합 방식

□ Key 변수 지정

- 데이터의 키변수 지정은 특별한 데이터를 추출하거나 두 개 이상의 데이터를 결합하고자 할 때 필요함.
- 가구용, 가구원용, 부가조사 설문용의 키변수는 다음과 같이 지정함.

○ 가구용 데이터

- 가구용 머지 키변수(h18_merkey)
- 개인 패널 ID(h18_pid) - 1번 가구원 개인 패널ID(변수명: h18_pid1), 2번 가구원 개인 패널ID(변수명: h18_pid2), 3번 가구원 개인 패널ID(변수명: h18_pid3), 4번 가구원 개인 패널ID(변수명: h18_pid4), 5번 가구원 개인 패널ID(변수명: h18_pid5), 6번 가구원 개인 패널ID(변수명: h18_pid6), 7번 가구원 개인 패널 ID(변수명: h18_pid7), 8번 가구원 개인 패널ID(변수명: h18_pid8), 9번 가구원 개인 패널ID(변수명: h18_pid9).

○ 가구원용 데이터

- 가구용 머지 키변수(h18_merkey)
- 개인 패널 ID(h18_pid)

○ 부가조사 설문용 데이터

- 가구용 머지 키변수(h18_merkey)
- 개인 패널 ID(h18_pid)

□ 데이터 결합 방식

【기본 팁】

두개 이상의 데이터에서 개인패널 ID에 대해서 관측치들을 옆으로 결합하는 방식을 개체 결합(Case Merge)이라 하고, 새로운 개인패널 ID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밑으로 결합하는 방법을 덧붙임 결합(Append Merge)이라 함.

○ 가구용과 가구원용 데이터 결합 방식

- 18차 한국복지패널조사에서 가구용데이터는 개인패널 ID를 포함해 가구일반사항

부터 사회보험 가입 및 퇴직금제 적용 및 소득까지 가구원별 하위관측 (Subobservation)들이 가로연속형태(Wide Type)로 이루어져 있어서 개인패널 ID를 기준으로 가구원용 데이터와 결합하기 위해선 가구용 데이터를 개인별로 세로연속형태(Long Type)로 변환하는 Reshaping절차가 우선적으로 필요함.

- 가구용 데이터와 가구원용 데이터를 결합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음.

• 절차1: [가구용 데이터의 Reshaping 절차: 가구용 데이터를 가구원번호별로 나누어 9개의 분리데이터를 생성 ➡ 각 분리데이터에 대하여 Reshaping절차를 시행 ➡ 덧붙임 결합방식으로 결합] ➡ 절차2: [세로연속형태로 변환된 가구용 데이터와 가구원용 데이터를 키변수를 기준으로 개체결합방식으로 결합] ➡ 절차3: [가구원용 혹은 부가조사 설문에 응답한 가구원의 데이터만 남김]

- 절차1: 우선 가구용 데이터를 1~9번 가구원별로 9개의 데이터파일로 분리시킴. 만약 3명으로 구성된 가구는 1번가구원~3번가구원 데이터셋에 포함될 것임. 그리고 가구원별 하위관측치를 갖는 ‘가구일반사항’, ‘건강 및 의료 A’, ‘경제활동상태’, ‘사회보험 가입 및 퇴직금제 적용’, ‘소득’ 부분에서 개인패널 ID를 포함한 분석변수를 선택하고, 각 데이터파일에서 동일한 문항들이 각각 똑같은 변수명을 갖도록 하위관측치 식별변수명(Subobservation Identifier Variable Name)을 부여함. 하위관측치 식별변수명을 새로 부여하는 이유는 9개의 분리데이터를 분석하고자 하는 변수에 대해서 동일한 변수명을 갖도록하여 덧붙임 결합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임. 9개의 데이터파일에 대해서 이와 같은 절차를 시행한 다음, 1번가구원 데이터셋을 주데이터(Master Data)로 지정하고 아래로 붙일 나머지 데이터들을 이용데이터(Using Data)로 지정하여 덧붙임 방식으로 결합함.

- 예를 들어 설명하면, 만약 가구일반사항의 하위관측인 개인 패널 ID, 가구원번호, 가구주와의 관계, 성별, 태어난 연도, 태어난 월을 가구원용 데이터와 결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면, 우선 가구용데이터를 가구원번호 1~9번까지 9개의 데이터파일로 나누고, 1번가구원 데이터셋의 경우 1번가구원에 해당하는 가구원 진입차수(h18_pind1), 개인 패널 ID(h18_pid1), 가구원번호(h1801_2), 가구주와의 관계(h1801_3), 성별(h1801_4), 태어난 연도(h1801_5)의 변수명을 각각 식별변수명인 h18_pid, h18_g1, h18_g2, h18_g3, h18_g4로 바꾸고, 2번가구원 데이터셋

의 경우 2번 가구원에 해당하는 가구원 진입차수(h18_pind2), 개인 패널 ID(h18_pid2), 가구원번호(h1801_14), 가구주와의 관계(h1801_16), 성별(h1801_16), 태어난 연도(h1801_17)의 변수명을 각각 식별변수명인 h18_pind, h18_pid, h18_g1, h18_g2, h18_g3, h18_g4로 바꾸는 방식으로 나머지 9번가구원 데이터파일까지 기존변수명을 식별변수명으로 변경함. 이러한 작업이 완료된 9개의 데이터파일을 덧붙임 방식으로 결합하면 한개의 전체 가구원별로 데이터가 세로로 세워지는 형태의 데이터셋이 구성됨.

【기본 팁】

하위관측치(Subobservation)가 포함된 문항(머지용 코드북 참조)

- 가구일반사항: 가구원 진입차수, 개인패널 ID, 가구원번호, 가구주와의 관계, 성별, 태어난 연도, 교육수준, 장애종류 및 등급(정도), 혼인상태, 종교, 동거여부
- 건강 및 의료: 건강상태, 외래진료횟수, 입원횟수, 입원일수, 병원에 입원한 이유, 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 형태, 건강검진 횟수, 만성질환, 주요병명, 민간의료보험 가입건수
- 경제활동상태: 근로능력정도, 근로무능력사유, 주된 경제활동 참여상태, 고용관계, 근로시간형태, 근로계약기간 설정 여부, 근로지속가능성, 업종, 직종, 사업장규모, 비경제활동사유
- 사회보험 가입, 퇴직금제 적용: 공적연금가입형태, 가입하고 있는 연금제도, 국민연금 가입종별, 국민연금납부여부, 국민연금미납유형, 국민연금 납부예외 사유, 국민연금 납부예외 기간, 국민연금 미납이유, 국민연금 미납기간, 국민연금 미가입이유, 산재보험 가입여부, 고용보험 가입여부, 퇴직금 적용여부, 퇴직연금 가입여부, 개인연금 가입여부
- 소득: 가구원의 경제활동(상용, 임시·일용, 고용주·자영업자, 농림축산업, 어업, 무급가족종사자), 해당 경제활동의 소득, 기타 근로소득

- 절차2: 주데이터인 가구용과 이용데이터인 가구원용 데이터를 키변수(h18_pid)로 각각 정렬시킨 다음, 키변수를 기준으로 데이터들을 가로 연속형태로 결합하게 되면, 모든 가구의 가구원에 대해서 가구원용 설문지에 응답한 사람의 데이터가 일치되어서 가로로 결합됨.
- 절차3: 가구원용 조사가 안된 가구원이 분석에서 불필요할 경우 최종 조사결과 확인(변수명: p18_cp)이 1인 경우만 남기면 가구원용 설문지 작성이 완료된 데이터만 남게 됨.

[그림 4-1] 가구용 데이터의 Reshaping 절차

표지	가구일반사항																			
	1번 가구원							2번 가구원							...	9번 가구원				
하위 관측치	가구패널 ID	가구원 진입차수	개인패널 ID	가구원 번호	가구주와의 관계	성 별	태어난 연도	가구원 진입차수	개인패널 ID	가구원 번호	가구주와의 관계	성 별	태어난 연도	...	가구원 진입차수	개인패널 ID	가구원 번호	가구주와의 관계	성 별	태어난 연도
변수명	h18_id	h18_pind1	h18_pid1	h1801_2	h1801_3	h1801_4	h1801_5	h18_pind2	h18_pid2	h1801_14	h1801_15	h1801_16	h1801_17	...	h18_pind9	h18_pid9	h1801_98	h1801_99	h1801_100	h1801_101
관측	100	1	10001	1	010	1	1950	1	10002	2	020	2	1952	...	2	10009	9	015	1	1980
	200	1	20001	1	010	1	1952	1	20002	2	020	2	1954	...						
	300	1	30001	1	010	1	1948	1	30002	2	020	2	1950	...	2	30009	9	016	2	1985

↓

1번 가구원 데이터파일	하위 관측치	가구패널ID	가구원 진입차수	개인 패널 ID	가구원번호	가구주와의 관계	성별	태어난 연도	...
	식별변수명	h18_id	h18_pind	h18_pid	h18_g1	h18_g2	h18_g3	h18_g4	...
	관측	100	1	10001	1	010	1	1950	...
		200	1	20001	1	010	1	1952	...
		300	1	30001	1	010	1	1948	...

+

2번 가구원 데이터파일	하위 관측치	가구패널ID	가구원 진입차수	개인 패널 ID	가구원번호	가구주와의 관계	성별	태어난 연도	...
	식별변수명	h18_id	h18_pind	h18_pid	h18_g1	h18_g2	h18_g3	h18_g4	...
	관측	100	1	10002	2	020	2	1952	...
		200	1	20002	2	020	2	1954	...
		300	1	30002	2	020	2	1950	...

+

⋮

+

9번 가구원 데이터파일	하위 관측치	가구패널ID	가구원 진입차수	개인 패널 ID	가구원번호	가구주와의 관계	성별	태어난 연도	...
	식별변수명	h18_id	h18_pind	h18_pid	h18_g1	h18_g2	h18_g3	h18_g4	...
	관측	100	2	10009	9	015	1	1980	...
		200	2	20009	9	015	1	1980	...
		300	2	30009	9	016	2	1985	...

- 가구용과 부가조사 설문용 데이터 결합 방식
 - 절차 상동.
- 가구원용과 부가조사 설문용 데이터 결합 방식
 - 절차1: 가구원용과 부가조사 설문용 각각의 데이터의 키변수인 개인패널ID(h18_pid)로 정렬시킴.
 - 절차2: 키변수를 기준으로 개체결합방식으로 결합함.
- 가구용과 가구원용과 부가조사 설문용 데이터 결합 방식
 - 가구용데이터를 가구원용과 부가조사 설문용 결합데이터와 결합함(절차는 가구용과 가구원용 데이터 결합방식과 동일)

【데이터 결합시 유의점】

- 가구용에서 개인패널 ID의 식별변수명(Subobservation Identifier Variable Name)은 반드시 'h18_pid'으로 부여해야 함.

3. 1~18차년도 자료의 결합방식

-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9차, 10차, 11차, 12차, 13차, 14차, 15차, 16차, 17차, 18차 가구용 데이터의 결합방식
 -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9차, 10차, 11차, 12차, 13차, 14차, 15차, 16차, 17차, 18차 가구용 데이터의 결합시 Key 변수는 h01_merkey, h02_merkey, h03_merkey, h04_merkey, h05_merkey, h06_merkey, h07_merkey, h08_merkey, h09_merkey, h10_merkey, h11_merkey, h12_merkey, h13_merkey, h14_merkey, h15_merkey, h16_merkey, h17_merkey, h18_merkey로 지정함.
 -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9차, 10차, 11차, 12차, 13차, 14차, 15차, 16차, 17차, 18차 가구용 데이터를 결합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음.

- **절차 1:** [각 데이터에서 Key 변수를 기준으로 정렬시킴] ➔ [1차 가구용데이터의 Key 변수 h01_merkey를 h_merkey로, 2차 가구용데이터의 Key 변수 h02_merkey를 h_merkey로, 3차 가구용데이터의 Key 변수 h03_merkey를 h_merkey로, ... , 15차 가구용데이터의 Key 변수 h15_merkey를 h_merkey로, 16차 가구용데이터의 Key 변수 h16_merkey를 h_merkey로, 17차 가구용데이터의 Key 변수 h17_merkey를 h_merkey로, 18차 가구용데이터의 Key 변수 h18_merkey를 h_merkey로 변수명을 바꿈(18개의 차수별 데이터에서 기준변수를 정해서 그 기준변수로 바꿔줌)] ➔ **절차 2:** [키변수를 기준으로 개체결합방식으로 결합]

【참고1】

〈7차 추가표본(1,800가구) 구분 여부〉

- 7차 추가표본(1,800가구)의 구분은 h_new=1(7차 추가 패널가구), h_new=0(기존 패널가구)
- 가구 ID로도 구분 가능함. 가구 ID가 8,000이상인 가구는 추가 패널가구, 기존 패널가구는 가구 ID가 1~7,072임.

〈17차 추가표본(2,012가구) 구분 여부〉

- 17차 추가표본(2,012가구)의 구분은 h_new1=1(17차 추가 패널가구), h_new1=0(그외 패널가구)
- 가구 ID로도 구분 가능함. 가구 ID가 10,000이상인 가구는 17차 추가 패널가구, 8,000~9,799인 가구는 7차 추가 패널가구, 기존 패널가구는 가구 ID가 1~7,072임.

〈가구 변수 생성 팁〉

- 위 두 개의 구분 변수 기준을 근거로 새로운 변수를 생성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가구 ID가 8,000 미만인 가구는 1을 부여하고 가구 ID 8,000이상이고 10,000미만인 가구는 2를 부여, 가구 ID가 10,000이상인 가구는 3을 부여한 hh_new라는 변수를 생성할 수 있음.

【참고2】

〈key 변수 h01_merkey, h02_merkey, h03_merkey, … , h15_merkey, h16_merkey, h17_merkey, h18_merkey의 구성〉

- 총 8자리수로 가구패널 ID 5자리, 가구생성차수 2자리, 가구분리일련번호 2자리로 구성되어 있음.
- 가구패널 ID: 1차년도 조사에서 조사가구당 서로 구별되게 부여된 일련의 수치임. 원가구로부터 분가가구가 생성시 분가가구의 가구패널 ID는 원가구의 가구패널 ID와 동일하게 부여하였음.
- 가구생성차수: 가구용데이터(원가구, 분가가구)에서 원가구와 분가가구를 구분하는 변수로 원가구로부터 분리된 분가가구가 생성된 차수를 의미함. 원가구의 경우 1의 값으로 유지되고 분가가구의 경우 분가가구를 생성한 패널차수로 구분됨.
- 예) 01: 1차(원가구), 02: 2차(신규가구), 03: 3차(신규가구), 04: 4차(신규가구), 05: 5차(신규가구), …, 17: 17차(신규가구), 18: 18차(신규가구),
- 가구분리일련번호: 동차년도 패널에서 하나의 원가구로부터 분리된 분가가구의 일련번호를 의미함. 만약 원가구로부터 2개 이상의 분가가구가 생성되었을 때 첫 번째 분가가구는 01, 두 번째 분가가구는 02, 세 번째 분가가구는 03, … 이와같은 방식으로 일련번호를 부여하였음.

□ 1~18차 개인용 데이터의 결합방식

-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9차, 10차, 11차, 12차, 13차, 14차, 15차, 16차, 17차, 18차 개인용 데이터의 결합시 Key 변수는 h01_pid, h02_pid, h03_pid, h04_pid, h05_pid, h06_pid, h07_pid, h08_pid, h09_pid, h10_pid, h11_pid, h12_pid, h13_pid, h14_pid, h15_pid, h16_pid, h17_pid, h18_pid로 지정함.
 -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9차, 10차, 11차, 12차, 13차, 14차, 15차, 16차, 17차, 18차 개인용 데이터를 결합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음.

절차 1: [각 데이터에서 Key 변수를 기준으로 정렬시킴] ➔ [1차 개인용데이터의 Key 변수 h01_pid를 h_pid로 2차 개인용데이터의 Key 변수 h02_pid를 h_pid로, 3차 개인용데이터의 Key 변수 h03_pid를 h_pid로, … , 15차 개인용데이터의 Key 변수 h15_pid를 h_pid로, 16차 개인용데이터의 Key 변수 h16_pid를 h_pid로, 17차 개인용데이터의 Key 변수 h17_pid를 h_pid로, 18차 개인용데이터의 Key 변수 h18_pid를 h_pid로 변수명을 바꿈] ➔ **절차 2:** [키변수를 기준으로 개체결합방식으로 결합]

【참고3】

〈원가구원과 신규가구원의 구별방법〉

- 18차년도 개인용 데이터에서 원가구원과 신규가구원을 구별하는 변수는 가구원 진입차수 (h18_pind)임.
- 가구원 진입차수(h18_pind)는 가구원이 가구에 진입한 차수를 의미함. 단, 9개월 이상 생계를 같이한 가구원에 한함. 만약 18차년도 조사에서 가구에 새로 진입한 가구원은 18로 부여, 17차년도 조사에서 가구에 새로 진입한 가구원은 17로 부여, 16차년도 조사에서 가구에 새로 진입한 가구원은 16로 부여, 15차년도 조사에서 가구에 새로 진입한 가구원은 15로 부여, 14차년도 조사에서 가구에 새로 진입한 가구원은 14로 부여, ... , 4차년도 조사에서 가구에 새로 진입한 가구원은 04으로 부여하였고, 3차년도 조사에서 가구에 새로 진입한 가구원은 03로 부여하였고, 2차년도에 조사된 가구원은 02로 부여하였고, 1차년도에 조사된 가구원은 01로 부여하였음.

【참고4】

〈유형 3, 4 설문지 대상자 구별방법〉

- 가구원용(유형 3: 원가구원용, 유형 4: 신규가구원용) 설문지 대상자는 2022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조사가구에서 9개월 이상 생계를 같이한 가구원 중에서 만 15세 이상이고 중·고등학교 재학생을 제외한 모든 가구원이 이에 포함됨.
- 유형3 설문지 대상자는 기존 가구원용 설문지 대상자이고, 유형4 설문지 대상자는 18차 조사에서 새롭게 가구원용 설문지 대상자에 포함되는 가구원임.
- 유형3(원가구원용) 혹은 유형4(신규가구원용)를 작성한 가구원을 구분하는 변수는 p18_tq로 p18_tq가 3이면 유형 3을 받은 가구원이고, p18_tq가 4이면 유형 4를 받은 가구원임.

제2절 가구용 데이터2)

1. 가구일반사항

【일반사항 관련 변수】

- 일반사항 관련하여 입력값이 결측이면 ‘.’가 출력되고, 모름/무응답이면 9 또는 99가 출력됨.
- 가구주와의 관계 변수의 입력값이 모름/무응답이면 999가 출력되고, 기타 친인척이면 997, 인척관계가 아닌 동거인이면 998이 출력됨.

【기본 팁】

Koweps 18차년도 자료에서 가구일반사항 항목은 ‘2022년 12월 31일 기준 가구 및 가구원의 일반사항’이다.

【변수 활용시 유의점】

- 가구원수는 2022년 1년(2022.1.1 ~ 12.31) 동안 9개월 이상 생계를 같이 하였던 가구원의 수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자란 소득과 소비를 공유하는 생활공동체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함.
 - 직장 때문에 따로 사는 가장, 학생, 기타 이유로 같이 살지 않는 가족은 가구원에 포함됨.
- 장애종류는 중복장애의 경우 장애정도(장애등급)가 높은 주 장애 한 가지만 기입되어 있으며, 장애정도(장애등급)이 같은 경우 생활에 더 큰 어려움을 주는 장애가 기입되어 있음.
- 장애등급제가 15차 조사(2019년)에 폐지됨에 따라 장애정도로 변경함(보기문항 유의: 1.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2.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3. 비등록 장애인).
 - 비등록 장애인에는 보훈처,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등록장애인을 포함.

2) 가구용 데이터의 변수 변경이력 테이블은 별도로 제공하는 엑셀파일에서 확인 가능함.

- 혼인상태는 남녀 18세 미만의 경우 0. 비해당으로 코딩되어 있으나, 해당 연령의 가구원이 혼인을 한 경우에는 1.유배우로 기입되어 있음.
 - “유배우”는 사실혼 관계도 포함

- 동거여부 변수에서 비동거사유가 기입된 경우(선택지 2~11.) 2022년 1년간 9개월 이상 생계를 같이했지만, 2022.12.31 기준 비동거인 가구원의 비동거사유를 의미함.

- 15차 조사에서 종교 문항 일시 삭제.

- 가구형태는 다음과 같이 정의됨(특히, 모부자 가구의 정의에 유의해야 함)
 - 단독: 1인 가구
 - 모자: 어머니와 18세 미만의 미혼자녀로만 구성된 가구(단, 취학 중인 경우 만 22세 미만)
 - 부자: 아버지와 18세 미만의 미혼자녀로만 구성된 가구(단, 취학 중인 경우 만 22세 미만)
 - 조손가구 또는 소년소녀가장: 18세 미만의 자가 가구주로 있는 가구 또는 만 65세 이상인 노인(할머니, 할아버지)과 같이 사는 경우 노인을 가구주로 하는 가구
 - 기타: 위에 해당되지 않는 가구

- 기초보장수급형태와 의료보장수급형태는 2015년 7월 1일부터 맞춤형급여 전환되어 기간에 유의(11차 조사)
 - 11차 기초보장수급형태와 의료보장수급형태의 기간은 2015년 1월 1일 ~ 2015년 6월 30일
 - 11차 맞춤형급여(생계, 의료, 주거, 교육)의 기간은 2015년 7월 1일 ~ 2015년 12월 31일

2. 건강 및 의료 A

【기본 팁】

Koweps 18차년도 자료에서 건강 및 의료 A 항목은 ‘2022년 1년 중(‘22.01.01~12.31)’시점을 기준으로 조사하였음. 단, 건강상태(h1802_2)와 민간의료보험 가입건수(h1802_3aq1)의 경우는 2022년 12월 31일을 기준시점으로 조사하였음.

【1,2차년도 이후 달라진 점】

Koweps 3차년도 자료에서부터 건강 및 의료 A의 문7) 주요 병명의 코드분류 항목을 추가하였음. 이 문항은 14차년도부터 원가구 3년 주기로 변경하여 원가구의 주요 병명은 조사하지 않았으며(단, 신규가구는 조사함), 15차년부터는 신규가구도 원가구와 동일하게 3년 주기 문항으로 변경하여 원가구, 신규가구 모두 조사하지 않음. 지난 16차에 원가구와 신규가구 모두 조사하였으며, 17~18차에는 조사하지 않음. 한편, 3차 때부터 문8) 민간의료보험 가입건수 문항이 추가되었음.

【변수 활용시 유의점】

- SYSMIS=. , 모름/무응답=9 또는 99 또는 999
- 외래진료횟수(h1802_3)의 경우는 하루에 동일병원 각각 다른 과를 2회 이상 진료하면 1회로 처리하였고, 2곳 이상의 병원을 이용하면 2회로 처리함(병원방문을 기준으로 함). 또한 외래진료횟수는 법정의료기관의 횟수만 합산하여 조사하였으며, 법정의료기관이란 종합/대학병원, 병·의원(지역내/지역외), 한방 병·의원, 보건소 등만을 포함함. 사회복지관 등의 정식 의료인가가 나지 않은 기관에서의 진료횟수는 합산하지 않음. 단, 의사가 왕진을 오거나 의사 1인 이상이 직원으로 상주하는 노인복지관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는 외래진료횟수에 포함함.
- 병원에 입원한 이유(h1802_6), 만성질환(h1802_aq1), 주요병명(h1602_9)의 경우 주된 것 1개지만 표기됨.

- 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h1802_7)의 경우 1,2,3차에는 평소에 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조사였지만 4차 이후 조사에서는 1년 중 의료기관을 이용한 경험이 있을 경우에만 해당 의료기관에 체크를 하며 1년 중 한 번도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않았을 경우 비해당에 체크하도록 변경하였음.
- 주요병명코드(h1602_9)의 경우 1,2차년도에는 고혈압, 저혈압 항목이 ‘㉞고혈압, 저혈압’으로 묶여있었으나, 3차년도부터 ‘㉞고혈압’, ‘㉟저혈압’으로 분리하여 항목을 구성하였음.
- 민간의료보험 가입건수(h1802_3aq1) 문항에서 가족의료보험(주계약자가 가구주, 종계약자가 배우자, 자녀로 되어 있는 경우)에 가입한 경우 가입건수는 1건이 아니라 가구원 각각이 가입한 것으로 체크하도록 하였음.
 - 상해보험 전용상품은 가입건수에서 제외하였으나, 상해와 질병보험이 혼합된 형태의 보험(생명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상해보험 등)은 포함하여 조사하였음.

3. 경제활동상태

【기본 팁】

Koweps 18차년도 자료에서 경제활동상태는 ‘2022년 12월 31일 기준’이고, ‘당시 만15세 이상(2007. 12. 31. 이전 출생자) 모든 가구원’이 응답하도록 하였다. 단, 건설 또는 농업 일용직과 같이 불규칙적인 일자리와 계절성이 강한 일자리(농업 등)에 대해서는 2022년 1년간 주되게 해 온 일자리를 응답하도록 하였다.

【변수 활용시 유의점】

- SYSMIS=., 모름/무응답=0 또는 9 또는 99 또는 9999
- 근로능력정도

구분	내용
1. 근로가능(일용노동 가능)	일터에서 종일 노동이 가능한 경우
2. 단순근로가능 (집에서 돈벌이를 할 수 있는 정도)	일터에서 종일 근로가 어렵거나, 장애, 질병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집에서 돈벌이를 할 수 있는 경우
3. 단순근로미약자(집안일만 가능)	돈을 벌기 위한 일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집에서 가사일을 하거나 보조할 수 있는 경우
4. 근로능력이 없어 경제활동을 하지 않음(집안일도 불가능)	장애, 부상, 질병, 노령 등으로 인하여 일을 전혀 할 수 없는 경우 (실제로 경제활동상태가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됨)

- 주된 경제활동 참여상태는 크게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음.

구분		내용
경제활동 인구	취업자	1. 상용직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이거나 정해진 계약 기간 없이 본인이 원하면 계속 일할 수 있는 자 (회사 내규에 의해 채용되어 인사관리 규정의 적용을 받고 상여금, 수당 및 퇴직금 등의 수혜를 받는 사람)
	2. 임시직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근로자이거나 근로계약기간이 없더라도 1년 이내에 이 일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되는 경우, 또는 일정한 사업완료(프로젝트 등)의 필요성에 의해서 고용된 자 (단, 한 직장에서 오래 일하였거나 앞으로도 계속 일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더라도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면 임시직)
	3. 일용직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근로자이거나, 매일매일 고용되어 일당제 급여를 받고 일하거나, 일정한 장소 없이 돌아다니면서 일한 대가를 받는 자
	4. 자활 및 공공근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서 실시하는 자활근로 또는 공공근로사업,

구분		내용
	로, 노인일자리	노인일자리, 희망근로에 종사하고 있는 자
	5. 고용주	한 사람 이상 피고용인을 두고 기업을 경영하거나 농장을 경영하는 자
	6. 자영업자	자기 혼자 또는 무급가족 종사자와 함께 자기 책임 하에 독립적인 형태로 전문적인 업을 수행하거나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
	7. 무급가족종사자	동일가구내 가족이 경영하는 사업체, 농장에서 무보수로 일하는 사람을 말하며, 주당 18시간 이상 일한 자 (단, 월급을 받고 일하는 경우는 무급가족종사자가 아님)
실업자	8. 실업자	만15세 이상 인구 중 지난 4주 동안 일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일을 하지 못한 자. 구직활동을 한 경우, 30일 이내에 새로운 직장에 들어갈 것이 확실한 취업대기자는 구직활동여부와 관계없이 실업자로 분류
비경제활동인구	9. 비경제활동인구	만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도 실업도 아닌 상태에 있는 자. 또한 주된 활동 상태에 따라 가사, 통학, 연로, 심신장애, 기타로 구분되며, 집에서 통근하는 군 복무자(공익근무요원 등)도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

- 2가지 이상의 경제활동에 참여한 경우 본인이 주된 활동이라고 생각하는 것 기준으로 응답함.
- 학생, 주부라도 소득을 목적으로 주당 1시간 이상 일한 경우와 일시휴직자(병가, 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도 취업자로 파악함.

□ 근로지속불가능 사유가 3차 때 추가됨에 따라 임금근로자 중 한시적 근로자의 한시적 근로 사유의 파악이 가능해짐.

- 1차 자료의 정규직/비정규직 구분

고용형태(h0103_5)	근로시간형태(h0103_6)	구분
한시적(=1)	시간제(=1)	비정규직
	전일제(=2)	
비전형(=2)	시간제(=1)	
	전일제(=2)	
정규직(=3)	시간제(=1)	정규직
	전일제(=2)	

○ 2차 자료의 정규직/비정규직 구분

고용관계(h0203_aq1)	근로시간형태(h0203_6)	근로계약유무, 근로지속가능성(h0203_aq2)	구분
직접고용(=1)	전일제(=2)	지속가능 무기근로(=1)	비정규직
		지속불가능 무기근로(=2)	
		지속가능 유기근로(=3)	
		지속불가능 유기근로(=4)	
	시간제(=1)	-	
간접고용(=2)	-	-	
특수고용(=3)	-	-	

○ 18차 자료(3~17차와 동일)의 정규직/비정규직 구분

고용관계(h1803_aq1)	근로시간형태(h1803_6)	근로계약유무 (h1803_3aq1)	근로지속가능성 (h1803_3aq2)	구분
직접고용(=1)	전일제(=2)	무기계약(=2)	지속가능(=1)	비정규직
		무기계약(=2)	지속불가능(=2)	
		유기계약(=1)	지속가능(=1)	
		유기계약(=1)	지속불가능(=2)	
	시간제(=1)	-	-	
간접고용(=2)	-	-	-	
특수고용(=3)	-	-	-	

□ 업종, 직종 코드는 각 회차별 조사연도의 한국표준산업분류와 한국표준직업분류의 기준에 따라 부여하였음. (코드북 참조)

○ 업종코드는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에 따라 1~3차, 4~13차, 14~18차로 나누어 살펴 보아야 하며, 14~18차의 경우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0차에 따라 일부 내용이 변경되었음.

- 3차는 자활, 공공근로, 노인일자리의 산업코드를 일괄 '97'로 표기하였으나, 4차 조사부터 각 일자리의 업종에 맞게 산업코드를 부여함.

- 4~13차에 '수리업(95)'은 14~18차에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으로 변경되었으며, 산업용 기계 및 장비수리업 '34', 임대업 '76'이 추가되었음.

○ 직종코드 또한 한국표준직업분류의 개정에 따라 1~3차, 4~13차, 14~18차로 나누어 살펴보아야 하며, 14~18차는 한국표준직업분류 제7차 개정에 따라 일부 내용이 변경되었음.

- 조사 지침의 변경사항으로서 1, 2, 3차 때 보험모집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유무와 관계없이 임금근로자 중 특수고용으로 분류하였으나, 4차부터는 사업자등록증이 있을 경우 자영자로 분류하였음.
- 4~13차에 ‘행정 및 경영지원 관리자(0120)’는 14차에 ‘0121’로 코드가 변경되었으며, ‘마케팅 및 광고홍보 관리자(0122)’가 추가되었음.
- 4~13차에 ‘정보시스템 개발 전문가(0222)’는 14차에 ‘컴퓨터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전문가(0222)’로 변경되고, ‘데이터 및 네트워크 관련 전문가(0223)’가 추가되었음.
- 공학 전문가 및 기술직의 하위항목은 14차부터 ‘전기·전자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0235→0234)’, ‘소방·방재 기술자 및 안전 관리원(0236, 신규)’, ‘환경공학 가스 에너지 기술자 및 시험원(0234→0237)’, ‘항공기·선박 기관사 및 관제사(0237→0238)’으로 변경되었음.
- ‘방문 노점 및 통신 판매 관련 종사자(0530)’는 ‘통신 관련 판매직(0531)’, ‘방문 및 노점 판매 관련직(0532)’로 변경되었으며, ‘영상 및 통신장비 관련 설치 및 수리원(0780)’은 ‘정보 통신기기 설치 및 수리원(0771)’, ‘방송 통신장비 관련 설치 및 수리원(0772)’으로 변경되었음.
- 건설 및 채굴 관련 기능직의 하위항목은 14차부터 ‘건설구조관련기능종사자(0771→0781)’, ‘건설관련기능종사자(0772→0782)’, ‘건축 마감 관련 기능 종사자(0773→0783)’, ‘채굴 및 토목 관련 기능 종사자(0774→0784)’로 변경되었음.

□ 7차년도부터 ‘경제활동 참여상태(12월 31일 기준)(18차년도 기준 h1803_7aq1)’이 추가됨

- 불규칙적인 일자리나 계절성이 강한 일자리(일용직, 자활 및 공공근로 등)의 경우 주된 일자리(문3)과 12월 31일 기준 참여상태(문3-1) 모두 응답하도록 하였음.

4. 사회보험, 퇴직(연금), 개인연금 가입

- 가구용 데이터에서 SYSMIS=. , 모름/무응답=9 또는 99
- 가구원 2~9 세부 항목은 가구원 1과 동일

【기본 팁】

Koweps에서 사회보험, 퇴직(연금), 개인연금 가입 관련 내용은 모두 조사 당시의 직전 연도 말일(12월 31일)을 기준으로 응답하도록 함. 따라서 1차 데이터는 2005년 12월 31일 기준, 2차는 2006년, 3차는 2007년, ..., 15차는 2019년, 16차는 2020년, 17차는 2021년, 18차는 2022년 12월 31일 기준의 정보가 담겨 있음.

【변수 활용시 유의점】

- 2차 이후 자료부터 공적연금 관련 변수를 보다 세분화하고 단계적인 질문방식으로 변경하였음.
 - 공적연금 가입형태(h1804_aq1)에서 공적연금 수급, 가입, 미가입 등을 파악하고, 가입하고 있는 연금제도(h1804_aq2)를 조사함.
 -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직 우체국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및 국민연금 가입자는 공적연금 “②가입” 혹은 “③수급하면서 가입”으로 응답하되, 보훈급여금은 제외함.
 - 미가입은 공적연금제도 가입대상자이지만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함.
 - 2013년부터 국민연금 수급연령이 단계적으로 상향됨에 따라 1962년생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던 자인데 2022년 12월 31일 기준 수급 혹은 임의계속가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④미가입”으로 응답하고 미가입이유에 “⑥만 60세 경과”로 응답함.
 - 국민연금 적용제외 대상자 중 특수직역연금 가입자 혹은 수급자가 아닌 만 18세 미만자와 60세 이상자, 27세 미만의 학생 혹은 군복무 등으로 소득이 없는 자, 공적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의 무소득 배우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국외 거주자 등은 “①비해당”에 해당함.
 - 국민연금 가입일 경우 가입종별(h1804_aq3), 납부여부(h1804_aq4), 미납일 경우 미납유형(h1804_aq5) 조사함.

- 국민연금 미납유형이 ‘납부예외’일 경우 납부예외사유(h1804_aq6)와 납부예외기간(h1804_aq7)을 응답하며, 미납유형이 단순 ‘미납(보험료 미납)’일 경우 미납이유(h1804_aq8)와 미납기간(h1804_aq9)을 응답함.
- 국민연금 가입종별을 모르거나 미가입일 경우 미가입 이유(h1804_aq10) 조사함.

□ 국민연금 가입종별(h1804_aq3) 변수

- 국민연금 가입종별에는 직장(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 등으로 응답함.
- 12월 31일 기준 경제활동상태(h1803_4, h1803_7aq1)에서는 자영자(=6), 무급가족종사자(=7), 실업자(=8), 비경제활동인구(=9) 등으로 응답했으면서도 국민연금 가입종별(h1804_aq3)에서는 직장가입자(=1)로 응답한 사례는, 실제 경제활동상태와 제도상 사회보험 가입 형태가 다른 경우가 있음.
- 예) 자영자이지만 다른 사업장에 직원으로 이름이 올라가 사회보험에 가입한 경우

□ 공적연금 및 국민연금 변수 관련 2~18차 자료와 1차 자료의 관계는 아래 표를 참조

2~16차 자료	변수값	1차 자료	비고
공적연금가입여부 (h0204_aq1~h1804_aq1)	비해당, 연금수급, 연금가입, 연금수급하면서 가입, 미가입	h0104_3, h0104_4	1차는 국민연금만 조사
가입 연금제도 (h0204_aq2~h1804_aq2)	특수지역연금	h0104_2(=1,2,3,4)	
	국민연금	h0104_3(=1,2,3,4) + h0104_4(=2,4,5)	
국민연금가입종별 (h0204_aq3~h1804_aq3)	직장, 지역, 임의, 임의계속	h0104_3(=1,2,3,4)	
국민연금납부여부 (h0204_aq4~h1804_aq4)	납부중	h0104_3(=1,2,3,4)	
	미납중	h0104_3(=5)	
국민연금미납유형 (h0204_aq5~h1804_aq5)	납부예외	h0104_4(=4)	
	단순미납	h0104_4(=5)	
국민연금 납부예외사유 (h0204_aq6~h1804_aq6)	실직 외, 입원, 생활곤란, 학업, 기타	없음	
국민연금 납부예외기간 (h0204_aq7~h1804_aq7)	1년간 납부예외 기간	없음	
국민연금 미납이유 (h0204_aq8~h1804_aq8)	경제적 이유, 제도불신, 불필요 등	h0104_6	
국민연금 미납기간 (h0204_aq9~h1804_aq9)	1년간 미납 기간	h0104_5	
국민연금 미가입 이유 (h0204_aq10~h1804_aq10)	경제적 이유, 제도불신, 불필요 등	h0104_7	

□ 국민연금 납부여부(h1804_aq4) 변수

- ‘납부하고 있지 않음(=2)’에는 납부기한을 깜박하고 잊어버리거나 자동이체의 인출 당일 잔고가 부족한 경우와 같이 고의적 미납이 아닌 경우는 포함되지 않음. 이들 경우는 ‘납부하고 있음(=1)’으로 응답하도록 하였음.
- 국민연금 납부여부(h1804_aq4)에 대해 ‘납부하고 있음(=1)’이라고 응답했으면서도 국민연금 미납기간(h1804_aq9)이 응답되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 이는 2022년 12월 31일 시점에서는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었지만, 2022년 1년간 미납경험이 있는 경우임.

□ 납부예외 기간(h1804_aq7)과 보험료 미납기간(h1804_aq9) 변수

- 당해 1년 동안의 합산 개월 수임.

□ 산재보험 가입여부(h1804_8) 변수

- 원칙적으로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산재보험은 당연 적용됨.
 -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이루어지는 사업에 종사하는 경우, 가구내 고용활동, 농·임·어업,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니면서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에 종사하는 경우, 자영업자, 비경제활동인구는 산재보험 가입여부가 “①비해당”임.
 - 근로자수가 1인 이상이며 산재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일하는 경우, 별정우체국직원, 보수를 받는 법인대표 등은 가입대상임.
 - 이외에도 중소기업 사업주, 자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활급여 수급자, 해외 파견자, 현장실습생도 산재보험의 특례로 가입가능함.

□ 고용보험가입여부(h1804_9) 변수

- 원칙적으로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고용보험은 당연 적용됨.
 -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이루어지는 사업에 종사하는 경우, 가구내 고용활동, 부동산 임대업, 농·임·어업,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니면서 상시근

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에 종사하는 경우, 비경제활동인구, 법인대표, 50인 이상 근로자 사용하는 고용주 및 자영자,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은 고용보험 가입여부가 “①비해당”임.

- 근로자수 1인 이상이고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일하는 경우, 공공근로, 행정서포터즈 등 일용직,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이나 3개월 이상 지속 고용된 자 등은 가입대상임.
- 이외에도 자활급여 수급자, 50인 미만 근로자 사용하는 고용주 및 자영자 등도 고용보험의 특례로 가입가능함.

□ 퇴직금(h1804_11) 및 퇴직연금(h1804_10) 가입여부 변수

- 퇴직금 적용여부의 경우 직장에서 퇴직금제도가 시행되는지가 아닌 본인이 퇴직 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가 기준임.
 - 특수지역연금 대상자, 고용주 및 자영자는 퇴직금 적용여부에 “①비해당”으로 응답함.
 - 퇴직금 중간정산을 통해 이미 퇴직금을 받아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받을 퇴직금이 적립되어 있지 않더라도 앞으로 퇴직금이 다시 적립되어 퇴직 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①받을 것이다”로 응답함.
 - 퇴직보험금의 적용을 받는 경우도 “①받을 것이다”로 응답함.

□ 개인연금 가입여부(h1804_aq11) 변수와 관련 1차 자료에서는 가구원용 설문지에서 조사한 반면, 2차 이후 자료에서는 가구용 설문지에서 조사하였음.

- 또한 2차 이후 자료에서는 종신보험의 경우 개인연금 전환이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종신보험을 가입한 경우도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4차 이후 자료에서는 개인연금과 종신보험 가입여부를 구분할 수 있도록 응답항목을 5가지로 세분화함.

구분	1차 자료	2차 자료	3차 자료	4~18차 자료
조사표 유형 변수명	가구원용 p0101 26	가구용 h0204 aq11	가구용 h0304 aq11	가구용 h0404 aq11~h1804 aq11
응답항목	가입(=1) 미가입(=2)	가입(=1), 미가입(=2), 모름(=3), 종신보험 가입(=4)	가입(=1), 미가입(=2), 모름(=3)	개인연금만 가입(=1), 종신보험만 가입(=2), 둘 다 가입(=3), 미가입(=4), 모름(=5)

□ 7차 이후 자료부터는 건강보험 가입여부(h1804_7aq1) 변수를 추가하여, 가구원별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등의 가입여부를 파악할 수 있음.

5. 의료 B

【기본 팁】

Koweps 18차년도에서 의료 B는 ‘2022년 1년 중(’22.01.01~12.31) 가구의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이용실태’에 관한 문항이다. 단, 민간의료보험의 12월 보험료(h1805_3aq2) 문항의 경우 2022년 12월을 기준으로 하였다.

【1,2차년도 이후 달라진 점】

Koweps의 의료 B 부분에서 3차년도 이후에 추가된 문항은 건강보험 가입자의 해당 종류(h1805_3aq1)와 민간의료보험의 12월 보험료(h1805_3aq2)이다. 그리고 문4) 건강보험의 보험료에 합당한 보장정도(nh1605_8), 문5) 의료기관 진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문항(nh1605_9)은 3년 주기로 묻는 문항으로 설정되었다. 따라서 1,4,7,10,13차년도에는 모든 가구가 작성을 하였으나 2,3,5,6,8,9,11,12,14차년도에는 원가구에게는 묻지 않고, 신규가구에겐만 물었으며, 15차년도부터는 신규가구도 원가구와 동일하게 3년주기 문항으로 변경하여 18차에는 원가구와 신규가구 모두 조사되지 않은 문항입에 주의해야 한다. 16차에 원가구와 신규가구 모두 조사되었다.

【변수 활용시 유의점】

- SYSMIS=. , 모름/무응답=9 또는 99 또는 999
- 건강보험 가입여부(h1805_1)에서는 가구원 중 한명이라도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속해있는 경우에 건강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체크하였음. 또한 (공적) 건강보험은 전 국민 대상의 국가의 공적 건강보험 가입여부를 말하는 것으로, 보험회사에 가입한 사적 건강보험은 제외됨.
- 미가입자의 혜택종류(h1805_2)에서는 가구주가 의료급여와 국가유공자 무료진료를 동시에 제공받고 있다면 주로 이용하는 지원(급여) 내용을 기록하였음.
 - 국가유공자 무료진료는 의료비를 국가보훈처로부터 전액 국비로 지원받는 국비진료 대상자(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등)인 경우를 말함(보훈병원에서 무료로 진료 받을 수 있음).

- 건강보험료 미납경험(h1805_4)여부는 가구 내 1명 이상 건강보험에 가입된 경우 (h1805_1=1)에 한해 응답하는 문항으로 설계되었음.

- 건강보험료 미납경험(h1805_4)이 있는 가구에게만 묻는 건강보험료 미납기간(h1805_6)은 1년 동안(연간) 미납한 개월 수임.

- 민간의료보험의 12월 보험료(h1805_3aq2)는 2022년 12월 기준으로 응답하도록 하였음.
 - 민간의료보험료는 혼합된 형태의 보험(기령, 종신보험에서 특약으로 질병에 관한 보장을 받는 경우 등)의 경우는 가능한 한 질병과 관련한 부분의 금액을 파악하였음. 만약, 혼합된 형태의 보험에서 질병과 관련한 부분의 금액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민간의료보험의 12월 보험료에 포함하지 않았음.

6. 주거

【기본 팁】

Koweps 18차년도 자료에서 주거 조사항목은 ‘2022년 12월 31일 기준 가구의 주거실태’이다. 단, 이사경험 여부(h1806_aq1), 총 원금상환액(h1806_aq2), 대출상환액 연체횟수(h1806_10), 주거복지 관련 사업(h1806_27~h1806_18aq2) 문항의 경우는 2022년 1년을 기준시점으로 조사하였다. 18차부터 주택유형(h1806_1)의 보기가 변경되었으며, 공공임대주택 유형 문항(h1806_3_18aq1)이 신설되었다. 또한 18차에 주거복지 관련 사업(h1806_27~h1806_18aq2)은 일부 문항의 명칭이 수정되었고(h1806_27, h1806_33, h1806_36, h1806_39), 일부 문항은 추가되었다(h1806_18aq2).

【변수 활용시 유의점】

- SYSMIS=. , 없음=0, 모름/무응답=9 또는 99 또는 999 또는 999999
- 주택 월세액(h1807_3aq3)의 경우 1차, 2차 년도에는 ‘주거’ 문항에 포함(h0106_7, h0206_7)하였으나 3차년도 이후에는 ‘생활비(지출)’ 문항에 포함하여 조사하였음.
- 주택 월세액(h1807_3aq3)의 경우 주거 점유형태(h1806_3)가 ‘보증부 월세’ 혹은 ‘월세’인 경우에만 값이 나타나는 것이 원칙임.
 - 그러나 본 조사에서는 주거 점유형태가 ‘자가’와 ‘기타’인 경우에도 월세액이 나타남. 이는 조사기준 시점에서 거주하고 있던 주택이 ‘자가’와 ‘기타’라 하더라도 토지 자체의 소유권이 주택소유자의 것이 아닐 수 있기 때문임. 즉, 주거용 건물을 포함하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없다면 ‘자가’ 혹은 ‘기타’라 하더라도 토지에 대한 사용료를 지불해야 하므로 지대(地貸, rent)를 주택 월세액으로 간주하여 표기하였음.
 - 또한 2022년 12월 31일 ‘보증부 월세’ 및 ‘월세’가 아니더라도, 2022년 1년 간 ‘보증부 월세’ 및 ‘월세’에 거주한 경험(이사)이 있으면 월세 지출액 0원 이상일 수 있음.

- 18차부터 주택유형(h1806_1)의 보기가 변경되었음.
 - 주택의 유형(h1806_1)은 1,2,3차 조사에서는 국민임대아파트를 주택유형 중 ‘⑤일반아파트’에 포함하여 조사하였으나 4차~17차조사에서는 따로 항목을 구성하여 ‘⑬국민·공공임대아파트’로 조사하였음.
 - 18차부터는 기존의 ‘⑥영구임대아파트’와 ‘⑬국민·공공임대아파트’ 보기를 삭제하고 해당 주택유형은 ‘⑤아파트’로 조사함. ‘점포주택 등 복합용도주택’은 ‘③영업겸용 단독주택’으로 수정, ‘비닐하우스, 움막, 판잣집’과 ‘임시가건물(컨테이너, 재개발지역 가이주단지 포함)’은 ‘⑩ 판잣집,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움막(임시가건물, 재개발지역 가이주단지 포함)’으로 통합함. 또, ‘⑨ 고시원’을 신설하였음.

- 주거 점유형태(h1806_3) 중 ‘기타’는 무상으로 주택에 사는 경우와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된 사택이나 관사에 사는 경우, 그리고 비가구원 명의의 주택(직계, 준비속 2촌 이내)에 사는 경우가 있음. 14차 조사부터는 ‘기타’와 ‘비가구원 명의 주택’에 사는 경우로 보기 문항을 구분하여 조사하였음.
 - 16차 조사부터는 임대가구(전세, 보증부 월세, 월세)의 유형을 공공과 민간으로 구분하고자 임대유형(h1806_3_16aq1) 문항을 추가하였음.
 - 18차의 주택유형(h1806_1)에서 ‘영구임대아파트’와 ‘국민·공공임대아파트’ 보기가 삭제됨에 따라, 별도의 공공임대주택 유형 문항을 추가하였음(h1806_3_18aq1).

- 주거면적(h1806_5)의 단위는 ‘㎡’이며 세 준 경우 그 면적을 제외한, 거주하고 있는 주택평수를 기준으로 응답하도록 하였음.

- ‘주택관련 부채(h1806_aq2, h1806_aq3)’에는 주택구입비, 보증금, 증개축비용만을 포함하고, 사업자금 마련을 위해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는 것은 제외하도록 하였음.

- 주거시설의 종류와 사용형태(h1806_21 ~ h1806_25)는 해당 시설이 2개 이상인 경우, 사용하는 시설 중 가장 좋은 것 혹은 발전된 형태의 시설을 기준으로 조사하였음.

- 주택의 구조·성능 및 환경의 경우, 최저주거기준에 포함된 ‘㉠안전한 전기시설과 화재

발생 시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는 구조와 설비를 갖추고 있다(h1806_15)’를 15차에 추가하여 조사하였음.

- 주거복지 관련사업의 이용경험과 관련하여 ‘공공임대주택’의 경우는 2022년 이전부터 입주하여 2022년 동안에 이용한 경험이 있다면 이용경험 여부에 ‘있다’로 응답하도록 하였음. 그러나, ‘전세자금(용자)지원’, ‘월세지원’, ‘주택구입자금(용자)지원’, ‘주거급여 외의 주택개량·개보수 지원’의 경우는 2022년 당해 연도에 지원받은 경우만을 이용경험 여부에 ‘있다’로 표기하도록 하였음.
- 18차에 주거복지 관련 사업(h1806_27~h1806_18aq2)의 항목을 수정 및 추가하였음. 17차 이전의 영구임대주택(h1706_27)과 국민·공공임대주택(h1706_30), 전세임대 또는 매입임대(h1706_14aq2)를 포괄하여 ‘공공임대주택(h1806_27)’으로 통합하였고, ‘전세자금(용자)지원(저소득·근로자·서민)’은 ‘전세자금(용자)지원(버팀목 전세자금대출)’으로(h1806_33), ‘저소득층 월세지원’은 ‘월세지원(주거안정 월세대출)’으로(h1806_36), ‘주택구입자금(용자)지원(근로자·서민)’은 ‘주택구입자금(용자)지원’으로 명칭을 수정하였음(h1806_39). 또한 ‘주거급여 외의 주택개량 개보수 지원’을 새로 추가함(h1806_18aq2).

7. 생활비(소비지출), 주관적 최저생계비

【생활비 관련 변수】

- 생활비 관련하여 비용이 없다면 0이 출력되고, 모름/무응답이면 9999가 출력됨.

【기본 팁】

Koweps 18차년도 자료에서 생활비 관련 항목은 “2022년 1년간(‘22.01.01~12.31)간의 지출을 합산하여 12개월로 나눈 월평균액”이며, 천원 단위는 소수점 처리하였다. 사업용도의 비용은 제외함.

【변수 활용시 유의사항】

- 생활비란 식료품비(자가소비 포함), 주거비(월세 포함), 광열수도비, 가구가사용품비, 피복신발비, 보건의료비, (공·사)교육비, 교양오락비, 교통통신비, 기타소비지출, 사적이전(따로 사는 가족에게 보내는 교육비 송금, 생활비 보조), 세금 및 사회보장 부담금을 포함한 금액임.
- 2차 조사까지는 의료비를 제외한 1회성 지출은 생활비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3차 조사부터는 관혼상제비 등의 1회성 지출도 생활비에 포함.
- 3차 조사부터 구체적인 비목별 생활비 변수가 포함되었고, 6차 조사부터 광열수도비, 기타 소비지출, 세금, 사회보장부담금에서 이 중 항목 변수가 포함됨.
- 총생활비 관련 변수의 활용
 - 소비지출 = 총생활비(h1807_9) - 세금 및 사회보장부담금(h1807_4 + h1807_5)
 - ※ 총생활비에 가구원이 아닌 부모나 자녀 등에게 보내는 송금보조금이 포함되어 있어 위 공식으로 산출된 소비지출은 정확한 수치가 아님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가계지출 = 총생활비(h1807_9) + 농축산 자가소비액(h1808_159 ÷ 12 + h1708_165 ÷ 12) + 지출한 이자(h1709_aq7 ÷ 12 + h1709_aq8 ÷ 12)
 - ※ 농축산 자가소비액과 지출한 이자는 “년 단위”로 조사되었으므로 가계지출을 산출할 때 반드시 “12”로 나누어주어야 함.
- 주관적 최저생활비(h1209_9)와 주관적 적정생활비(h1209_6aq4)는 6차까지 부채, 이자 영역에서 조사되었고, 7차부터는 생활비 영역에 포함하여 조사되었으며 13차에서 삭제함.

8. 소득

【소득 관련 변수】

- 소득 관련하여 소득이 없다면 0이 출력되고, 모름/무응답이면 99 또는 9999999가 출력됨.
- 가구원번호의 입력값이 결측이면 ‘.’가 출력됨.

【생성 소득관련 변수】

변수명	구분	세부항목	단위	비고
h18_din	가처분소득	-	만원	
h18_cin	경상소득	-	만원	
h18_flag	가처분소득 및 경상소득	무응답 대체법 적용 여부	0. 대체법 미적용 1. 대체법 적용	-
h18_hc	균등화소득에 따른 가구 구분 (원표본)	-	1. 일반가구 2. 저소득층 가구	원표본 가구
h18_hc_all	균등화소득에 따른 가구 구분 (원표본 + 7차 추가 표본)	-	1. 일반가구 2. 저소득층 가구	1차 원표본 가구 + 7차(1,800가구) 추가
h18_hc_n_all	균등화소득에 따른 가구 구분 (통합표본)	-	1. 일반가구 2. 저소득층 가구	1차 원표본 가구 + 7차(1,800가구) 추가 + 17차(2,012가구) 추가

【기본 팁】

Koweps 18차년도 자료에서 가구 소득은 2022년 1월 ~ 12월 1년간 가구원 모두의 연간 소득이다. 근로 소득은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만 15세 이상 모든 가구원에 대하여 2022년 동안의 경제 활동을 모두 기입한 후 해당 경제 활동과 관련된 소득을 묻는 방식으로 조사된 결과이다(설문지 참조). 또한 모든 소득은 조세와 사회보장부담금을 내기 전 소득이다.

고용주·자영자 순소득, 농업소득, 어업소득의 경우 총매출액에서 총비용을 빼준 값이므로 0 또는 음의 값(-)이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소득에 log를 취하는 등의 처리를 할 경우 0 또는 음의 값을 조정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해당 소득이 없는 경우 해당 변수는 빈칸(sysmis)으로 처리되었다(예를 들면, 가구에 사업 소득자가 없는 경우 사업소득란은 모두 빈칸 처리되었다). 따라서 새로운 소득변수(예를 들면, 경상소득)를 산출하고자 할 경우, 각 변수를 합할 때 반드시 빈칸을 0으로 재코드화(recoding)해주어야 한다.

또한, 4차 이후부터, 해당 가구원이 없는 경우도 빈칸(sysmis)으로 처리되었다(가구원 2명인 경우 3번~9번 가구원의 근로소득 변수는 모두 빈칸 처리).

예) if h1708_114 = . then h1708_114 = 0;

Koweps 2차년도부터 고용주·자영자 근로소득은 두 가지로 조사되었다. 하나는 연간 순소득(h1808_148, 150, 152, 154, 4aq86, 4aq88, 4aq90, 4aq92, 4aq94)으로서 이는 〈연간 총매출액 - 연간 총비용〉으로 계산된 소득이다. 다른 하나는 연간 전입소득(h1808_aq2, aq4, aq6, aq8, 4aq96, 4aq98, 4aq100, 4aq102, 4aq104)으로서 이는 총 수입 중 가구로 가지고 들어온 금액이다. 예를 들면, 2022년 2,000만원을 벌어서 1,300만원을 재투자하고, 집으로 700만원을 가지고 왔다면, 순소득은 2,000만원, 전입소득은 700만원이 된다. 따라서 전입소득은 음의 값이 없다.

Koweps 4차년도부터 부업소득 변수가 없어지고 대신 기타근로소득 변수가 생성되었다. 이는 가구원이 두 가지 이상의 경제활동에 동시에 종사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주·부업을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3차년도까지는 상용근로자가 부업으로 일용직 근로를 병행하던 경우 각각의 경제활동에서 발생한 소득을 상용근로소득과 부업소득으로 분류하였으나, 4차년도부터는 상용근로소득과 임시일용근로소득으로 구분함과 동시에 상용과 임시일용근로소득을 조사한 가구원 수를 3차년도의 5명에서 9명으로 확대하였다. 이에 따라 4차년도 이후의 기타근로소득 변수는 모든 가구원의 근로소득 외에 주 1시간 미만의 근로활동(15세 미만의 가구원이(아르바이트 등을 통해) 얻은 소득도 포함)으로 벌어들이는 소득을 의미한다.

【변수 활용】

[그림 4-2] 소득구분

통계청			OECD					LIS
소	비경상 소득	경조소득 페폼매각대금 기타						
	경상 소득	근로소득	Wage and Salary Income	1차소득 (Primary Income) ¹⁾	시장소득 (Market Income)	총소득 (Gross Income)	가처분소득 (Disposable Income)	가처분소득 (Disposable Income)
사업 및 부업소득		Gross Self-Employment Income						
재산소득		Realized Property Income						
이전 소득		사적	기업연금(Occupational Pensions)과 기타 사적 현금소득 ²⁾					
		공적	사회보험 및 사회부조 현금급여					
지 출	비소비 지출	공적연금	사회보장 부담금					
		사회보험						
		조세	소득세					
	기타 비소비지출	재산세, 토지세, 자동차세, 면허세 등						
소비 지출								

주: 1) LIS 자료에는 요소소득(Factor income)이라 명명함.

2) 정기적인 사적 이전소득, 즉, 부양금, 양육비, 기타 정기적으로 현금소득 등

자료: 박찬용·강석훈·김태완, 소득분배와 빈곤동향 및 변화요인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2.

유경준·김대일, 소득분배 국제비교와 빈곤연구, 한국개발연구원, 2003

□ 근로소득

- 상용근로자 임금소득 = h1808_114 + h1808_116 + h1808_118 + h1808_120 +
h1808_3aq2 + h1808_4aq70 + h1808_4aq72 +
h1808_4aq74 + h1808_4aq76
- 임시·일용근로자 임금소득 = h1808_122 + h1808_124 + h1808_126 +
h1808_128 + h1808_130 + h1808_4aq78 +
h1808_4aq80 + h1808_4aq82 + h1808_4aq84
- 근로소득 = 상용근로자 임금소득 + 임시·일용근로자 임금소득

□ 사업 및 부업소득

- 고용주·자영자 사업소득(순소득) = h1808_148 + h1808_150 + h1808_152 +
h1808_154 + h1808_4aq86 + h1808_4aq88
+ h1808_4aq90 + h1808_4aq92 +
h1808_4aq94
- 농림축산업소득(순소득) = h1808_164
- 어업소득(순소득) = h1808_170
- 기타근로소득 = h1808_172 + h1808_174 + h1808_176 + h1808_178 +
h1808_4aq106 + h1808_4aq108 + h1808_4aq110 +
h1808_4aq112 + h1808_4aq114
- 사업 및 부업소득 = 자영자 및 사업주의 사업소득 + 농림수산업소득 + 어업소득
+ 기타근로소득

□ 재산소득

- 재산소득 = 이자 및 배당금(h1808_aq9) + 임대료(h1808_aq10) +
기타재산소득(h1808_aq11)

□ 사적이전소득

- 사적이전소득 = 부모(h1808_3aq6)나 자녀로부터의 보조금(h1808_3aq7) +
민간보험{개인연금(h1808_aq15) + 퇴직연금(h1808_6aq1)} +
기타 민간보조금(h1808_aq34)

※ 사적이전소득에 9개월 미만 동거 가구원의 소득(h1808_aq32, h1808_aq33)은
Ⅶ 생활비에는 포함되지 않은 항목으로 사적이전소득에는 포함되지 않음(생활비
에는 포함되지 않아 소득과 지출을 비교할 때 소득이 높게 나올 수 있음).

□ 공적이전소득

- 사회보험급여 = 공적연금(h1808_aq12) + 고용보험(h1808_aq13) +
산재보험(h1808_aq14)
- 맞춤형급여 = 생계급여(h1808_11aq3) + 주거급여(h1808_11aq5) + 교육급여
(h1808_11aq8)
- 기타정부보조금 =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h1808_aq16) + 기초연금(h1808_10aq1)
+ 한부모가족지원(h1808_aq19) + 가정위탁금(h1808_aq20) +
양육수당(h1808_aq21) + 보육료 지원(h1808_5aq3) +
아동수당(h1808_14aq3) + 학비지원(h1808_aq22) + 국가유공자
보조금(h1808_aq23) + 농어업정부보조금(h1808_aq24) +
긴급복지지원금(h1808_4aq116) + 기타 마우처
지원금(h1808_4aq117) + 국민취업지원제도(h1808_18aq1) +
근로장려세제(h1808_5aq1) + 자녀장려세제(h1808_11aq1) +
급식비지원(h1808_7aq4) + 에너지감면(h1808_7aq6) +
통신비감면(h1808_7aq8) + 기타 보조금(h1808_aq25)
- 지방보조금 = 지방보조금(h1808_15aq1)
- 재난지원금 = 재난지원금(h1808_16aq1)
- 공적이전소득 = 사회보험급여 + 맞춤형급여 + 기타정부보조금 + 지방보조금 +
재난지원금
- ※ 1~10차에서는 공적이전소득에 기초보장급여가 포함되고, 11차에는 기초보장급여와 맞
춤형급여가 포함되고, 12차부터는 맞춤형급여만 포함

- ※ 10차에서는 기초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이 존재하고, 11차부터는 기초노령연금은 삭제되고 기초연금만 존재함
- ※ 11차부터 자녀장려세제가 추가됨.
- ※ 14차부터 아동수당(4개월: 9월~12월 지급)이 추가됨.
- ※ 기존 14차까지 조사에서는 지방보조금이 기타정부보조금의 기타보조금에 포함되어 조사되었으나, 15차부터는 지방보조금을 분리하여 조사함.
- ※ 16차부터 재난지원금이 추가됨.
- ※ 18차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추가됨. 또한, 18차부터 공적연금에 포함되어 있던 보훈급여를 기타정부보조금의 국가유공자 보조금에 포함하여 조사함(이전 조사(1~17차)에서는 보훈급여를 공적연금(특수지역연금)에 포함하여 조사).

□ 비경상소득(기타소득)

- 비경상소득 = 증여·상속(h1808_aq26) + 경조금(h1808_aq27) + 보상금(h1808_aq28) + 사고보험금(h1808_aq29) + 퇴직금·사회보험 일시금·보장성 보험 해약금(h1808_3aq5) + 동산·부동산매매차익(h1808_4aq118) + 기타소득(h1808_aq30)

□ 소득 산출(연단위)

- 1차소득 = 근로소득 + 사업 및 부업소득 + 재산소득
- 시장소득 = 근로소득 + 사업 및 부업소득 + 재산소득 + 사적이전소득
- 경상소득(h18_cin) = 근로소득 + 사업 및 부업소득 + 재산소득 + 사적이전소득 + 공적이전소득
- 가처분소득(h18_din) = 근로소득 + 사업 및 부업소득 + 재산소득 + 사적이전소득 + 공적이전소득 - 세금 및 사회보장부담금{(h1807_4+h1807_5)×12}

※ 주의: 소득은 연간 단위이며, 지출은 월단위이다. 따라서 세금 및 사회보장부담금에 12(개월)를 곱한 다음 소득에서 빼주어야 정확한 가처분소득이 산출된다.

9. 부채, 이자

【기본 팁】

Koweps 18차년도 자료에서 2022년 12월 31일 명의기준, 현시가 기준으로 조사되었다. 단, 부채에 대한 이자는 2022년 1년간 실제로 지출한 부채에 대한 이자이다.

- 없음=0, 모름/무응답=9999999
- 총부채액 = 금융기관대출(h1809_aq1) + 일반사채(h1809_aq2) + 카드빚(h1809_aq3) + 전세보증금(받은돈)(h1809_aq4) + 외상 및 미리탄 계돈(h1809_aq5) + 기타부채(h1809_aq6)
 - 단, 1차년도 자료에서는 ‘h0109_1~h0109_6’은 부채 보유여부(0: 없다, 1: 있다)로 응답하고, 총 부채액에서 금액을 기입하였음.
- 12차년도부터 ‘부채용도(h1809_12aq1~h1809_12aq6)’에 대한 문항이 추가됨.
 - 12월 31일 기준으로 남아있는 부채액이 어떤 형태인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추가되었음.
 - 부채용도의 세부항목에 포함되는 예시는 다음과 같음.
 - 생활비(생계비): 식료품, 의류비, 가구집기, 세금, 사회보험 지급 등을 위한 비용
 - 주택관련 자금(전세보증금 포함): 살고있는 집을 기준으로 월세, 도배, 이사비, 복비, 수리비 등을 위한 비용
 - 교육(학자금마련 포함): 공교육, 사교육, 교재비, 수학여행 등을 위한 비용
 - 의료비: 병원비, 치과비, 한의원, 약국 등을 위한 비용
 - 빚갚음: 부채상환을 위한 비용
 - 기타: 위에 해당되지 않는 비용. 자동차 구입, 경조사, 자녀결혼자금, 여행자금 등이 포함됨

10. 재산

【기본 팁】

Koweps 18차년도 자료에서 재산은 2022년 12월 31일 명의기준, 현시가 기준으로 조사되었다.

- 없음=0, 모름/무응답=9999999
- 총재산액/순재산액
 - 주거형태별 거주주택가격의 산정기준: 자가는 주택가격, 전세는 전세금, 보증부월세는 보증금, 기타는 기타가격
 - 총재산액 = 거주주택가격 (h1806_6) +
소유부동산 (h1810_aq1, h1810_aq2, h1810_aq3) +
점유부동산 (h1810_aq4, h1810_aq5) +
금융자산 (h1810_aq6, h1810_aq7, h1810_aq8, h1810_aq9, h1810_aq10) +
농기계 (h1810_aq11, h1810_aq12, h1810_aq13, h1810_aq14, h1810_aq15) +
농축산물 (h1810_aq16, h1810_aq17, h1810_aq18, h1810_aq19, h1810_aq20) +
자동차가격 (h1810_27) +
기타재산 (h1810_aq23, h1810_aq24, h1810_aq25, h1810_aq26)
 - 순재산액 = 총재산액 - 총부채액
- 단, 1차년도 자료에서는 ‘h0110_1~h0110_3, h0110_5~h0110_6, h0110_8~h0110_12, h0110_14~h0110_18, h0110_20~h0110_24’은 항목별 재산 보유 여부(0: 없다, 1: 있다)로 응답하고, 항목별 재산 합계액을 기입하였음.

11. 생활여건

【기본 팁】

Koweps 18차년도 자료에서 생활여건 관련 문항은 ‘2022년 1년 중(’22.01.01~12.31) 가
구에서 돈이 없어 겪을 수 있는 상태에 대한 경험 여부’이다.

【변수 활용시 유의점】

- 모름/무응답=9
- ‘2달 이상 집세가 밀렸거나 집세를 낼 수 없어서 집을 옮긴 적이 있다’(h1811_2), ‘자녀의 공교육비를 한 달 이상 주지 못한 적이 있다’(h1811_5) 그리고 ‘건강보험 미납으로 인하여 보험 급여자격을 정지당한 경험이 있다’(h1811_3aq1)의 경우 ‘③ 비해당’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함.
 - 집세를 밀렸거나 낼 수 없어 집을 옮긴 경험(h1811_2)의 ‘비해당’은 2022년 1년 내내 자가 혹은 무상으로 거주한 경우임.
 - 공교육비를 한달 이상 주지 못한 경험(h1811_5)의 ‘비해당’은 자녀가 없거나 혹은 미취학, 대학원생인 경우임.
 - 건강보험 미납으로 급여자격 정지 경험(h1811_3aq1)의 ‘비해당’은 2022년 1년 내내 의료급여 혹은 국가유공자 무료진료만을 받은 경우임.
- ‘가구원 중 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가 된 경험자 여부’(h1811_8) 문항의 경우 2022년 이전에 신용불량자로 되었던 사람이 2022년 동안에도 신용불량자의 상태로 있었다면 ‘①있다’로 조사하였음.
- ‘건강보험 미납으로 인하여 보험 급여자격을 정지당한 경험이 있다’(h1811_3aq1)에서 건강보험 미납의 경우 미납기간이 연속 6개월 이상인 경우를 기준으로 조사하였음(※ 단, 1~11차년도는 연속 3개월 이상인 경우를 기준으로 조사).

12. 국민기초생활보장

【기본 팁】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법 개정에 따라 2015년 7월부터 급여종류별로 선정기준을 차등하는 ‘맞춤형급여’ 체계로 운영됨. 이에 따라 Koweps 11차년도 자료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을 1~6월 기준 문항과 7~12월 기준(맞춤형급여) 문항으로 나누어 조사하였으며, 12차년도(2016년 기준)부터는 맞춤형급여 체계만 조사함.

【변수 활용 시 유의점】

- 모름/무응답=9 또는 99 또는 9999으로 표기함
- 국민기초생활보장 맞춤형급여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각각에 대한 수급 및 탈락 여부, 수급 기간, 평가 등을 조사함.
 - 4개 급여를 모두 받는 가구 외에 맞춤형 급여이기 때문에 1~3개의 급여만 받는 경우가 있음. 이 때 수급기간, 평가 등의 문항은 수급한 급여에 대해서만 조사하므로 변수 활용 시 주의를 요함.
 - 예를 들어 주거급여만 수급하는 경우, 주거급여에 해당하는 수급기간, 급여수준의 적정성 등을 조사하였으며 나머지 급여는 변수에 해당하는 값이 없음. 또한, 교육급여는 소득요건이 충족되어도 교육급여 대상자가 없는 경우 수급할 수 없기 때문에 나머지 급여만 수급하는 경우가 있음.
- 특수한 사례이지만 한 가구에 수급자가 두 명인 경우(주민등록이 별도로 설정된 경우 가능)에는 가구주를 기준으로 응답을 받음.
 - 조건부 수급, 의료특례, 자활특례, 교육특례 등도 수급가구에 포함되며, 가구원 중 일부만 수급하는 가구도 수급가구로 간주함.
- 국민기초생활보장 문항은 원가구의 경우 지난 1년(18차 조사의 경우 2022년)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수급기간(문 2-1)에서 연도를 따로 제공할 필요가 없지만, 신규가구의 경우 가구생성 이후부터 수급기간을 조사하기 때문에 3년 전부터(18차 조사의 경우 2021

년) 수급하는 경우가 있음. 그러므로 수급시작 월과 마지막 월 외에 수급시작 연도와 마지막 연도 변수를 제공함.

○ 원가구가 과거부터 계속 급여를 받아온 경우는 전년도 1월부터로 표기하고(18차 조사
의 경우 2022년 1월부터), 신규가구는 신규가구 생성 이후부터 표기함.

□ 과거부터 계속 수급하던 대상자는 급여를 신청하지 않아도 수급이 지속될 수 있으므로
급여 신청 여부(h1812_2_11aq1)와 수급 경험(h1812_2_11aq13)은 별개의 변수로 활용
해야 함.

○ 즉, 2022년에 신청한 적이 없더라도 그 전부터 이어서 계속 급여를 받을 수 있음.

□ 수급이유(h1812_2_11aq43~h1812_2_11aq46)는 한 번이라도 받은 적이 있으면 수급한
최초 기준으로 판단해서 응답함.

○ 수급 탈락 후 재 수급을 받는 경우, 재 수급 신청 당시 기준으로 응답함.

□ 급여수준의 적정성(h1812_2_11aq47~h1812_2_11aq50)은 한 번이라도 받은 적이 있으
면 응답함.

○ 다만, 수급기간은 수급과 탈피를 반복한 경우, 받은 모든 급여 수준으로 응답함.

□ 급여 탈피 예상 기간(h1812_2_11aq51~h1812_2_11aq54)은 전년도 12월 말까지 급여
를 받은 대상자만 응답하므로 중간에 수급에서 탈피한 경우 응답하지 않음.

□ 반대로 급여 탈피 이유(h1812_2_11aq55~h1812_2_11aq58)는 전년도에 급여를 받다가
12월 말까지 받지 못하고 중간에 탈락한 경우만 응답함.

13. 근로(자녀)장려세제

【기본 팁】

Koweps 18차년도 자료에서 ‘근로(자녀)장려세제’의 문항들은 2022년 1년 동안의 기준으로 한 변수들이다. 10차년도까지는 근로장려세제만 조사하였으나 2015년 자녀장려세제가 도입되면서 동일한 문항으로 함께 조사하였다.

【변수 활용 시 유의점】

- 4차년도에 근로장려세제 영역이 신설되었고 5차년도부터 급여가 지급되었음.
 - 4차년도 자료에서는 ‘근로장려세제’가 시행예정이었으므로 이에 대한 인식 및 신청 여부에 관한 문항만 조사함.
 - 5차년도부터는 근로장려세제 신청 및 수급여부, 사용 현황, 도움정도, 근로의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문항을 추가하여 조사함.

- 11차년도부터는 ‘자녀장려세제’ 급여가 지급되었음.
 - 11차부터 자녀장려세제에 대한 인식, 급여의 신청 및 수급여부, 사용 현황, 도움정도, 근로의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추가로 조사함.
 - 다만, 월가구의 경우 근로장려세제에 대한 인식을 지속적으로 조사하였기 때문에 11차년도부터 13차년도까지는 신규가구에게만 근로장려세제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 월가구에게는 자녀장려세제에 대한 인식을 조사함. 그러므로 ‘문 1) 근로장려세제에 대한 인식’의 경우, 11에서 13차까지는 신규가구만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음에 유의.
 - Koweps 14차년도부터는 월가구와 신규가구 모두에게 문 1)에서 근로(자녀)장려세제에 대한 인식을 모두 조사하였음.

- 수급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인식(h1812_1_4aq2)은 전년도가 아닌 조사 당해 연도를 기준으로 조사함.
 - 18차년도의 경우 급여의 신청 및 수급여부, 사용 현황 등은 2022년 기준이고 수급 요건 충족 여부만 2023년 기준임

14. 가구의 복지서비스 이용

□ 가구의 복지서비스 이용

【기본 팁 1】

- 지난 1년간(18차 연도인 경우, 2022년 1년간) 응답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각각의 복지 서비스에 대한 이용경험을 질문하였다.
- 복지서비스는 공공기관에서 제공하거나 민간의 복지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비용을 공공 부문에서 일부 보조해주는 것들을 말하며, 응답자가 민간의 복지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비용도 스스로 전부 부담하고 있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

【기본 팁 2】

- 16차 연도부터 가정봉사서비스(h1613_14)의 명칭을 가사지원서비스로 변경하였다.
- 15차 연도부터 권익보장 지원(공공후견서비스 등)(h1513_15aq1)를 추가하였다.
- 8차 연도부터 각 서비스 항목의 이용만족도 문항을 삭제하였다.
- 8차 연도부터 ‘상담(고민, 갈등, 정신건강 관련)’, ‘약물 상담’, ‘학대 혹은 가정폭력 상담’, ‘아동을 위한 부모상담, 부모교육’ 문항을 삭제하고, 이들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상담 서비스(h0813_8aq1)’를 추가하였다.
- 8차 연도부터 개인이 저축한 금액에 대하여 정부가 일정 금액을 매칭하여 적립하는 제도를 의미하는 ‘개인발달계좌(자산형성프로그램)(h0813_8aq2)’를 추가하였다. 개인발달계좌는 적립 중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7차 연도부터 각 서비스 항목의 서비스 제공기관 문항을 삭제하였다.
- 5차 연도부터 생계, 생업, 자립, 교육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을 국가나 국가의 신용보증을 통해 대출해주는 서비스를 의미하는 ‘대출·융자(h0513_5aq1~3)’를 추가하였다.
- 2차 연도부터 각 서비스 항목의 필요성정도 문항을 삭제하였다.

□ 바우처 서비스

【기본 탭1】

- 4차 연도부터 바우처서비스 이용에 관한 조사가 추가되었다.
- 지난 1년간(18차 연도인 경우, 2022년 1년간) 바우처서비스를 이용해 본 적이 있는지를 먼저 질문한 후, 이용경험이 있는 응답자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이용하였는지를 질문하였다.

【기본 탭2】

- 16차 연도부터 ‘노인돌봄종합서비스’ 경험여부를 제도 폐지에 따라 삭제하였음.
- 15차 연도부터 ‘아이돌봄지원’을 추가하였다.
- 15차 연도부터 기존의 ‘발달재활서비스’와 ‘언어발달지원’을 통합하여 ‘장애아동가족지원(h1513_15aq3)’를 추가하였다.
- 15차 연도부터 ‘발달장애인지원(h1513_15aq4)’을 추가하였는데, 이 항목에는 기존의 ‘발달장애인부모심리상담서비스’와 2018년에 도입된 ‘발달장애인지원활동서비스’,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 활동서비스’를 포함하였다.
- 12차 연도부터 통합문화 이용권(문화누리카드, 스포츠강좌이용권), 에너지바우처가 추가되었다.
- 11차 연도부터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가 삭제되었다. ‘아이사랑보육서비스(아이즐거운카드유아학비지원 포함)’는 ‘아이행복카드(보육료·유아학비 지원)’으로 명칭 변경됨에 따라 문항명이 수정되었다.
- 10차 연도부터 발달장애인부모 상담서비스가 8대 바우처 사업(전국)으로 편성됨에 따라 보기 문항으로 추가되었다.
- 8차 연도부터 각 바우처서비스 항목의 이용만족도, 본인부담금 문항을 삭제하였다.
- 7차 연도부터 각 바우처서비스 항목의 본인부담금 문항(h0713_7aq1~7)을 추가하였다. 본인부담금은 월 단위로 해당 바우처 이용 가구가 실제 지출한 금액을 의미한다. 본인부담금은 ‘이용한 달의 월 평균금액’을 의미하며, ‘총비용/12’가 아니다.
- 6차 연도부터 ‘언어발달지원사업(h0613_6aq1~2)’을 추가하였고, ‘비만아동건강관리서비스’가 지역개발형으로 전환됨에 따라 삭제하였다.
- 6차 연도부터 ‘아이사랑보육서비스’와 ‘아이즐거운카드 유아학비지원’을 함께 조사하였다.

‘아이사랑보육서비스’는 영유아 부모에게 서비스 이용권을 제공하는 보육서비스를 말하고, ‘아이즐거운카드 유아학비지원’은 유치원 취원 유아에 대한 유아학비지원을 말한다.

- 5차 연도부터 ‘임신출산진료비지원사업(h0513_5aq4~5)’,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h0513_5aq6~7)’, ‘아이사랑보육서비스(h0513_5aq8~9)’를 추가하였다.

□ 장기요양보험급여

【기본 팁 1】

- 4차 연도부터 장기요양보험급여 이용에 관한 조사가 추가되었다.
- 지난 1년간(18차년도인 경우, 2022년 1년간) 가구원 중에 장기요양보험급여를 받은 가구원이 있는지를 먼저 질문한 후, 그러한 가구원이 있는 경우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지불한 금액, 급여유형별 이용여부를 질문하였다. 장기요양보험급여를 받은 가구원이 없을 경우 지불금액과 급여유형별 문항은 SYSMIS=.로 처리된다.

【기본 팁 2】

- 8차 연도부터 각 장기요양보험급여 항목의 이용만족도 문항을 삭제하였다.
-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지불한 금액은 ‘이용한 달의 월 평균금액’을 의미하며, ‘총비용/12’가 아니다. 예를 들어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6개월 동안 매월 만원의 금액을 지불했다면 월단위 금액은 만원이다. 1개월만 이용했으면 3만원의 금액을 지불하였다면 월단위 금액은 3만원이다. 2개월을 이용했고 첫 번째 달은 3만원, 두 번째 달은 4만원을 지불하였다면 월단위 금액은 3만 5천원이다.

15. 노인가구의 복지서비스 이용

【기본 팁 1】

- 2022년 12월 31일 기준, 만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가구가 응답하였다.
- 지난 1년간(18차 연도에는 2022년 1년간) 응답자(노인부양자가 응답하였을 경우는 가구의 노인 전체를 고려하여 응답함)의 상황을 고려하여 각각의 복지서비스에 대한 이용경험을 질문하였다.
- 복지서비스는 공공기관에서 제공하거나 민간의 복지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비용을 공공 부문에서 일부 보조해주는 것들을 말하며, 응답자가 민간의 복지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비용도 스스로 전부 부담하고 있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

【기본 팁 2】

- 15차 연도부터 ‘가정봉사서비스’를 ‘가사지원서비스’로, ‘사회교육서비스’를 ‘사회참여서비스’로 문항명을 변경하였다.
- 8차 연도부터 각 서비스 항목의 이용만족도 문항을 삭제하였다.
- 7차 연도부터 각 서비스 항목의 서비스제공기관 문항을 삭제하였다.
- 3차 연도 이전 ‘경로연금’을 4차 연도에는 ‘경로연금(기초노령연금)’으로, 5차 연도부터 ‘기초노령연금’으로, 11차 연도 부터는 ‘기초연금’으로 변수명을 변경하였다.
- 5차 연도부터 ‘방문 가정간호 혹은 간병 서비스’를 ‘방문 가정간호, 간병, 목욕 서비스’로 변경하였다.
- 4차 연도부터 ‘교통수단 지원’을 ‘이동편의 서비스’로 변경하였다.
- 4차 연도부터 ‘주간보호 서비스’를 ‘주·야간보호 서비스’로 변경하고 ‘단기보호 서비스’를 삭제하였다.
- 4차 연도부터 ‘사회교육서비스(h0414_4aq1~3)’를 추가하였다.
- 3차 연도부터 ‘노인일자리사업(h0314_3aq1~3)’을 추가하였다.

16. 아동기구의 복지서비스 이용

【기본 팁 1】

- 만0~17세 아동이 있는 가구가 응답하였다. 응답자 본인의 친자녀뿐만 아니라, 조카 손자녀 등 만0~17세 이하의 아동, 청소년 가구원을 모두 포함한다.
- 지난 1년간(18차 조사의 경우, 2022년 1년간) 응답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각각의 복지 서비스에 대한 이용경험을 질문하였다.
- 복지서비스는 공공기관에서 제공하거나 민간의 복지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비용을 공공 부문에서 일부 보조해주는 것들을 말하며, 응답자가 민간의 복지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비용도 스스로 전부 부담하고 있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
- 공공어린이집은 ‘정부지원시설’로도 불리며 정부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는 국공립, 사회 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영아전담·장애아전담 어린이집과 공공기관 또는 고용보험기금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는 직장어린이집을 말한다. 공공형 어린이집이나 서울형/부산형 어린이집은 모두 공공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는다는 점에서 ‘공공어린이집’에 해당한다.
- 본 설문에서는 초등학교의 무상교육은 학비지원으로 간주하지 않았고, 중학교, 고등학교의 무상교육은 학비지원에 포함시켰다. 단계적으로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무상교육이 되는 과정에서 공적지원의 범위가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기본 팁 2】

- 14차 연도부터 ‘아동수당’을 추가하였다.
- 8차 연도부터 ‘가정봉사 서비스’를 ‘가정봉사·아이돌봄 서비스’로 변경하였다.
- 7차 연도부터 각 서비스 항목의 서비스제공기관 문항을 삭제하였다.
- 6차 연도부터 ‘방과후 지도’를 ‘방과후돌봄서비스’로 변경하였다.
- 5차 연도부터 ‘보육료 감면 및 유치원비 보조’를 ‘양육·보육료 및 유치원비 보조(양육수당 포함)’로 변경하였다.
- 2차 연도 이전의 ‘어린이집’을 3차 연도에는 ‘국공립(사회복지법인) 보육시설’로, 7차 연도에는 ‘공공보육시설’, 8차 연도에는 ‘공공어린이집’으로 변경하였다.
- 2차 연도부터 아동양육의 어려움 문항과 2차 연도부터 각 서비스 항목의 필요성 정도 문항을 삭제하였다.

□ 아동 관련 변수_추가된 아동 여부

【기본 팁】

- 18차년도 조사에는 2021년 4월 1일에서 2022년 3월 31일 동안 새롭게 추가된 아동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이다.
- 추가된 아동 여부 변수는 기존 가구인 경우에만 응답하는 문항이다. 그래서, 신규 가구 일 경우, 아동 관련해서 나머지 문항(출생체중, 선천성 질환, 사교육 관련 문항)에는 응답하지만, ‘추가된 아동 여부 변수’에는 응답하지 않는다.
- 15차 연도에는 추가된 아동 여부 문항이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으로 조사시간 단축으로 인해 일시삭제 되었다가, 16차 연도에 복원되었다.
- 2차 연도부터 추가된 문항이다.

□ 아동 관련 변수_출생체중, 선천성질환

【기본 팁】

- 15차 연도에는 출생체중, 선천성 질환 문항이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으로 조사시간 단축으로 인해 일시삭제 되었다가, 16차 연도에 복원되었다.

□ 아동 관련 변수_사교육·보육 이용실태, 부담정도

【기본 팁】

- 17차 연도에서는 보기 ‘16.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아이돌보미’를 ‘16. 공적 지원 아이돌보미’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공적 지원 아이돌보미를 제공하는 기관의 다수가 건강지원센터이긴 하지만, 기타 다른 기관들도 공적 지원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명칭을 변경하였다.
- 8차 연도부터 한 명의 아동에 대해 조사하는 사교육·보육 이용기관을 5개에서 3개로 축소하였다.
- 사교육·보육기관의 보기 항목은 아래와 같이 조사 차수에 따라 변경되었다.

1~2차	3~4차	5~7차	8차 ~16차	17차
1. 국공립 어린이집 -	1. 국공립 혹은 사회복지법인 보육시설	1. 국공립 혹은 사회복지법인 보육시설	1. 국공립 어린이집 2.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1. 국공립 어린이집 2.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2. 민간어린이집	2. 민간어린이집	2. 민간어린이집	3. 민간어린이집	3. 민간어린이집
3. 사설놀이방	3. 사설놀이방	3. 사설놀이방	4. 가정어린이집	4. 가정어린이집
4. 직장보육시설	4. 직장보육시설	4. 직장보육시설	5. 직장어린이집	5. 직장어린이집
5. 정규시간 이외에 보육도 맡아주는 유치원	5. 정규시간 이외에 보육도 맡아주는 유치원	5. 정규시간 이외에 보육도 맡아주는 유치원	6. 정규시간 이외에 보육도 맡아주는 유치원	6. 정규시간 이외에 보육도 맡아주는 유치원
6. 정규시간만을 담당하는 유치원	6. 정규시간만을 담당하는 유치원	6. 정규시간만을 담당하는 유치원	7. 정규시간만을 담당하는 유치원	7. 정규시간만을 담당하는 유치원
7. 학원	7. 학원	7. 학원	8. 학원	8. 학원
8. 개인·그룹과외	8. 개인·그룹과외	8. 개인·그룹과외	9. 개인·그룹과외	9. 개인·그룹과외
9. 학습지	9. 학습지	9. 학습지	10. 학습지	10. 학습지
10. 방과후 교내보충학습	10. 방과후 교내보충학습	10. 방과후 교내보충학습	11. 방과후 교내보충학습	11. 방과후 교내보충학습
11. 방과후 교실	11. 방과후 교실	11. 방과후 교실	12. 방과후 교실	12. 방과후 교실
12. 친·인척	12. 친·인척	12. 친·인척	13. 친·인척	13. 친·인척
13. 이웃이나 아이 돌보미	13. 이웃	13. 이웃	14. 이웃	14. 이웃
	14.건강가정지원센 터의 아이 돌보미	14.건강가정지원센 터의 아이 돌보미	15.건강가정지원센 터의 아이 돌보미	15. 공적 지원 아이 돌보미
	15. 민간 아이 돌보미	15. 민간 아이 돌보미	16. 민간 아이 돌보미	16. 민간 아이 돌보미
14. 기타 -	16. 기타 -	16. 기타 17. 그 외 보육시설	17. 기타 18. 그 외 보육시설	17. 기타 18. 그 외 보육시설

- 한 달 평균 사교육비 및 보육비는 교재비, 도구실습비, 간식비 등의 부대비용까지 포함 된 값이다.
- 2차 연도부터 사교육, 보육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 사교육 및 보육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정도를 삭제하였다.

17. 장애인가구의 복지서비스 이용

[기본 팁]

- 15차 연도부터 ‘권익보장지원’ 문항을 추가하였다.
- 8차 연도부터 각 서비스 항목의 이용만족도 문항을 삭제하였다.
- 8차 연도부터 ‘재활보조기구 및 생활편의용품 지원’ 문항을 ‘의료재활서비스’에 통합하였다.
- 8차 연도부터 ‘장애인자립지원 서비스’를 ‘사회적응 및 취업관련 서비스’에 통합하였다.
- 7차 연도부터 각 서비스 항목의 서비스제공기관 문항을 삭제하였다.
- 과거의 장애수당은 2010년 7월에 개편되어 중증장애인에게는 장애인연금이, 경증장애인에게는 장애수당이 지급된다. 따라서 2010년의 서비스 경험을 묻는 6차 연도에는 2010년 상반기의 서비스 경험을 ‘장애수당’에 응답하게 하고 하반기의 서비스 경험을 ‘장애인연금(중증)’과 ‘장애수당(경증)’에 응답하게 하였다.
- 7차 연도부터 ‘방문 가정간호 혹은 간병 서비스’를 ‘방문 가정간호, 간병, 목욕 서비스’로 변경하였다.
- 4차 연도부터 ‘장애아동부양수당’을 ‘장애아동수당’으로 변경하였다.
- 4차 연도부터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를 ‘장애인 자립지원서비스’로 변경하고 ‘공공시설 내 자판기, 매점, 신문·복권 판매대 등 사업권’을 삭제하였다.
- 4차 연도부터 ‘가사지원서비스’를 삭제하고 ‘가정봉사서비스(h0416_4aq1~3)’와 ‘방문 가정간호 혹은 간병 서비스(h0416_4aq4~6)’를 추가하였다.
- 4차 연도부터 ‘직업재활시설 및 보호작업장’,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취업지원서비스’, ‘사회복귀훈련, 사회적응훈련, 자립생활훈련’을 삭제하고 이들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회적응 및 취업관련 서비스(h0416_4aq7~9)’를 추가하였다.
- 3차 연도 이전의 ‘장애자녀 교육비 지원 및 학습지원 서비스’를 4차 연도에 ‘장애자녀 관련 프로그램’으로, 6차 연도에 ‘장애아동 및 장애인자녀 관련 프로그램’으로 변경하였다.
- 4차 연도부터 ‘LPG 차량 등 자동차 관련 지원’을 ‘자동차 관련 지원’으로 변경하였다. ‘자동차 관련 지원’은 건강보험료 책정 시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장애인용 LPG연료 세금인상액 지원 등을 말한다.
- 2차 연도부터 각 서비스 항목의 필요성정도와 장애인 생활(보호)와 관련된 어려움 문항을 삭제하였다.

18. 가족

【기본 팁 1】

- 18차 연도에서 가족문제 관련 항목은 2022년 1년간의 가족생활을 기준으로 조사하였다.
- 가구를 구성하고 있는 가구원을 중심으로 근심이나 갈등 요인을 파악하였으며, 가구원 외의 경우에는 직계혈족 1촌 이내까지만 포함하여 조사하였다.
- 6차 연도에는 근심이나 갈등을 초래한 문제의 보기에 ‘자녀의 결혼문제’를 추가하였다.

【기본 팁 2】

- 15차 연도에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으로 인한 조사시간 단축으로 인해 ‘1년간 근심이나 갈등을 초래한 문제(h1617_1, h1617_2)’ 변수가 일시 삭제되었다가, 16차에 복원되었다.

【변수 활용】

□ 가족갈등 대처방법 변수의 활용

- 5개의 문항을 아래와 같이 코딩 변경한다.

변수명	1점	2점	3점	4점	5점
h1817_5	①	②	③	④	⑤
h1817_3, h1817_4, h1817_6, h1817_7	⑤	④	③	②	①

- 코딩 변경한 5개의 변수를 아래와 같이 계산한다.
 - 가족갈등 대처방법 = $(h1817_3 + h1817_4 + h1817_5 + h1817_6 + h1817_7) / 5$
- 총점을 사용하는 경우 5로 나누지 않는다.
- 계산된 값이 높을수록 가족 갈등 대처방법이 긍정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제3절 가구원용 데이터3)

1. 사회보험, 개인연금, 퇴직금(퇴직보험) 수급

- 가구원용 데이터에서 SYSMIS=. , 모름/무응답=9 또는 99 또는 9999 또는 99999 또는 999999

【기본 팁】

사회보험/개인연금/퇴직금과 관련된 항목은 조사기준 시점, 즉 직전 연도 1년 동안의 정보를 조사한 것임. 따라서 1차 데이터는 2005년, 2차는 2006년, 3차는 2007년, ..., 15차는 2019년, 16차는 2020년, 17차는 2021년, 18차는 2022년 1년 동안이 기준임.

【변수 활용시 유의점】

- 공적연금 수급여부(p1801_1)변수
 - 가구용 ‘공적연금 가입’에 대한 변수와 달리 가구원용 ‘공적연금 수급’에 대한 문항에서는 보훈급여금까지 포함함.
- 2차 이후 자료에서는 2개 이상의 연금을 수급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수급하는 공적연금의 종류를 두 개까지 응답하도록 하였음(공적연금 종류1 p1801_2, 공적연금 종류2 p1801_aq1).
- 수급받는 국민연금 급여 종류 및 급여액(p1801_3~p1801_6)변수
 - 노령연금 수급자 중 ‘노령연금 연기제도’를 통해 연금수급을 연기한 자는 연금급여액이 0임.
 - 2차 이후 자료에서는 **응답자가 가구주인 경우**, 유족연금을 수급하는 14세 이하 혹은 중고등학생 가구원이 있으면 그 금액도 포함하도록 함.
- 고용보험 급여종류1, 2순위(p1801_16~p1801_17)변수
 -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 배우자출산휴가,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고용보험미적용지출산급여 등 모성보호사업은 ②로 응답함.

3) 가구원용 데이터의 변수 변경이력 테이블은 별도로 제공하는 엑셀파일에서 확인 가능함.

□ 산재보험 급여종류1, 2순위 및 급여액(p1801_21~p1801_25)변수

- 산재보험급여 중 요양급여는 업무상 부상 및 질병으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지급되는 현물급여임. 비용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해당 요양기관에 직접 지급하기 때문에 요양급여의 급여액이 0원임.

□ 개인연금 및 퇴직급여(p1801_27~p1801_34)관련 변수

- 개인연금 가입여부(p0101_26)는 1차에서만 가구원용 설문지에서 조사하고, 2차부터는 가구용 설문지에서 조사함(h0204_aq11~h1804_aq11).
- 개인연금 및 퇴직급여가 여러 개를 동시에 받은 경우 합계액을 입력하며, 세금이나 담보대출 등을 공제한 후 순수하게 받은 금액을 의미함.

2. 근로

【기본 팁】

Koweps 18차년도 자료에서 ‘근로’의 문항들은 2022년 12월 31일 내지는 2022년 1년 동안을 기준으로 한 변수들이다.

【변수 활용 시 유의점】

- SYSMIS=. , 모름/무응답=9 또는 99 또는 9999
- 근로유형
 - 1차 조사에는 근로유형이 ‘임금근로자’, ‘자영업, 고용주’, ‘무급 가족 종사자’, ‘미취업자’로 구분하였으나, 2차 조사부터는 ‘임금근로자’, ‘자영업, 고용주’, ‘무급 가족 종사자’, ‘미취업자(근로능력있음)’, ‘미취업자(근로능력없음)’으로 추가 구분함.
- 직장(사업) 그만둔 경험
 - 질병, 출산 등으로 일시 휴직한 경우(병가,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농사나 일용직 등 부정기적인 일의 특성상 이를 쉬는 경우(농한기 등)는 직장을 그만 둔 것으로 보지 않음.
- 근무를 시작한 시기
 - 주업과 부업이 바뀌었을 경우 첫 직장을 그만둔 적이 있다고 응답하고, 근무시작 시기는 처음 근무한 시기로 응답함.
 - 공공근로자 또는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그만둔 사유에 대해 입력을 하고, 근무시작 시기는 처음 근무한 시기로 응답함.
- 연간 근로 개월수와 월평균 근로일수
 - 농사를 짓는 경우 연간 근로 개월수는 12개월로 응답함.
 - 직장이 계속 있기는 하지만 몇 개월간 휴직을 한 경우(무급휴직이든, 유급휴직이든) 실제 일한 시간을 기준으로 응답함.

- 예를 들어 1년간 육아 휴직을 한 경우라면, 연간 근로 개월 수가 '0'임.

□ 8차년도부터 '일한 달의 월 평균 임금(p1802_8aq1)'과 '일한 날의 시간당 임금(p1802_8aq2)'이 추가됨.

○ 일한 달의 월 평균 임금(p1802_8aq1)은 규칙적으로 일한 경우 일한 달의 월 평균 임금을 응답함.

○ 일한 날의 시간당 임금(p1802_8aq2)은 불규칙적으로 일한 경우의 일한 날의 시간당 임금을 응답함

○ 휴직중이거나, 고용주,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의 경우는 결측임.

□ 구직과정 중 어려움(p1802_8aq3, p1802_8aq4)

○ 1~7차는 구직과정 중 어려움을 5점 척도로 응답하였으나, 8차부터는 구직과정 중 어려움을 1순위, 2순위로 응답함

□ 기대수입

○ 1~3차 조사에는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에게 질문하였으나, 4차 조사부터는 실업자에게만 질문함.

○ 1~3차 연계분석 시에는 '구직활동여부 변수'를 '① 그렇다'인 경우만 선택해서 분석해야 함.

□ 정부고용지원 프로그램의 경험여부, 참여기간 및 만족도

○ 1~2차 조사에는 '자활사업 참여 여부 및 만족도'로 조사하였으며, 근로유형이 '미취업자(근로능력있음)'에게만 질문함.

○ 3차 조사부터는 근로유형이 '취업자(임금근로자, 자영업, 고용주, 무급 가족 종사자)'와 '미취업자(근로능력있음)'에게 질문함.

○ 4차에 정부 고용지원프로그램을 재분류함.

- 5차에는 희망근로, 청년인턴십 프로그램을 추가하였으며, 6차에는 근로자능력개발 훈련 프로그램을 추가함.

- 8차부터 만족도와 참여기간에 대한 질문을 생략하고, 경험여부만 조사됨 (p1802_8aq5 ~ p1802_8aq15)
 - 8차부터는 참여한 고용지원 프로그램의 도움정도에 대한 조사를 삭제함.
 - 12차부터 취업성공패키지 경험여부가 추가되었으며, 17차에 국민취업지원제도(구 취업성공패키지 통폐합)으로 변경됨(p1802_12aq1)
 - 17차에 실업자 직업훈련 관련 프로그램을 ‘미취업자’ 직업훈련 관련 프로그램으로, 근로자 능력 개발 훈련 관련 프로그램을 ‘취업자’ 능력 개발 훈련 관련 프로그램으로 명칭 변경함(p1802_8aq10, p1802_8aq14)
- 새로운 기술 습득(p1802_aq2, p1802_aq3) 및 습득한 직업기술 해당직종(p1802_aq4, p1802_aq5)
- 2022년 1년 동안 어떤 새로운 직업기술을 습득했는지와 그 직종을 파악하고자 한 문항으로, 신규가구원 조사에서는 본 문항을 조사하지 않음.
 - 다만, 17차 추가표본 대상은 모두 신규가구원으로, 원래대로라면 본 문항을 조사하지 않으나, 추가표본 대상 가구원 모두 해당 문항을 조사하였음. 추가표본 대상 가구의 조사 피로도 완화를 위해 교육 및 개인사 영역(F,G) 조사를 하지 않는 대신에 위 문항 조사를 실시함.

3. 생활실태·만족 및 의식

【기본 팁】

Koweps 18차년도 자료에서 생활실태·만족 및 의식 관련 문항은 2022년 1년 중 ('22.01.01~12.31)을 기준시점으로 조사하였다.

【경제적 생활수준(p0703_3, p0703_4, p0703_4aq1) / 1,4,7차와 2,3,5,6,8~18차 차이점】

Koweps에서 생활실태·만족 및 의식 부분 중 1차년도에 물었던 문3)경제적 생활상태 (p0103_3, p0103_4), 문5)미래에 목표로 하는 사회(p0103_13) 문항은 3년 주기로 묻는 문항으로 설정되었다. 따라서 4차년도에는 이 두 문항이 다시 조사되었다. 단, 4차년도에서는 경제적 생활수준 만족도(p0403_3, p0403_4)와 관련하여 조사기준 시점인 2008년 이외에도 2007년 기준에 대한 경제적 생활수준의 만족도 문항(p0403_4aq1)을 추가로 포함하여 조사하였으며, 7차년도에서도 동일하게 제작년, 작년, 5년 후의 경제적 생활수준 만족도 문항(p0703_3, p0703_4, p0703_4aq1) 및 미래에 목표로 하는 사회문항(p0703_13)을 조사하였다.

* 8차년도부터 상기 언급된 4개 변수는 문항을 삭제하였기 때문에 조사하지 않는다.

【변수 활용시 유의점】

- SYSMIS=. , 모름/무응답=9
- 건강 만족도(p1803_5)부터 전반적 만족도(p1803_12)까지는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고, “매우 불만족”(1점)부터 “매우 만족”(5점) 순으로 점수가 부여됨.
- 주거환경 만족도(p1803_7) 문항에서 가구원이 생계만 공유하고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 그 가구원이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거환경의 만족도를 조사하였음.

4. 사회적 환경에 대한 의식

【기본 팁】

Koweps 18차년도 자료에서 사회적 환경에 대한 의식 관련 문항은 2022년 1년 중 (*22.01.01~12.31)을 기준시점으로 조사하였다.

【사회적 신뢰 / 3년 주기】

- 사회적 환경에 대한 의식 부분 중 문1) 대부분 사람들을 믿을만한지에 대한 견해, 문 2) 위급한 사람을 도와줄 용의, 문3) 비선호시설 입지를 받아들일 용의 문항은 3년 주기로 묻는 문항으로 1, 4, 7, 10, 13, 16차년도에 조사되었다.

【성역할 / 3~13차, 14차부터 3년 주기】

- 3차년도에 “성역할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관련 문항(p1604_3aq1~p1604_3aq8)을 포함하였다. 이 문항은 5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구성되었다.
- 해당 문항은 14차부터 3년 주기 문항으로 변경되어 신규가구만 14차에 조사되었으며, 15차에는 신규가구도 원가구와 동일하게 3년 주기로 변경하였고, 16차에 원가구와 신규가구 조사되었으며, 17차~18차에는 조사되지 않았다.

【1차에만 조사된 문항】

- 또한 1차년도에 조사되었던 문6) 경제적·정서적 어려움 등에 처했을 때 도움을 받은 곳, 도움을 준 사람 수, 도움종류, 도움정도(p0104_14~p0104_44), 문7) 평일, 토요일, 일요일의 활동내용 및 할애시간(p0104_45~p0104_62) 문항은 삭제되었다.

【변수 활용시 유의점】

- SYSMIS=. , 모름/무응답=9 또는 99 또는 999 또는 99999
- 기부 및 자원봉사(p1804_4, p1804_6)의 경우 정기적으로 기부를 하거나 자원봉사활동을 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묻는 문항으로 1년에 3~4차례 전화모금 등에 참여하는 것은 포함

하지 않음.

○ 연간 기부액(p1804_5)은 만 원 단위임.

□ 기술통계치를 산출할 경우 비동거 부모와의 왕래 정도(p1804_8~p1804_10), 통화 정도(p1804_11~p1804_13)는 주, 월, 년 중 하나로만 대답하도록 했기 때문에 해당횟수가 주, 월, 년 중 어떤 기준에 따른 것인지 확인해야 함.

□ 비동거 부모님이 계신지 여부(p1804_7) 문항에서 비동거 부모님은 주거와 생계를 달리 하는 부모님을 말함. 응답자 본인의 부모님에 대해서만 조사하며, 계부, 계모를 포함.

□ 성역할에 관한 문항(p1604_3aq1~p1604_3aq8)의 원척도는 ISSP(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me)의 Family and Changing Gender Roles I~III(1988, 1994, 2002)로, 그 중 8개 문항을 선별하여 번안한 것임. 각 문항이 측정하고자 하는 세부영역은 다음과 같음.

○ 성역할 문항은 14차부터 3년 주기 문항으로 변경되었으며, 15차부터는 신규가구 조사도 원가구와 동일하게 3년 주기로 통일하여 조사하지 않았고, 16차에 원가구, 신규가구 모두 조사하였음.

— p1604_3aq1 ~ p1604_3aq2: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와 가족책임의 충돌에 대한 인식

— p1604_3aq3 ~ p1604_3aq5: 젠더 역할에 대한 관념

— p1604_3aq6 ~ p1604_3aq8: 일과 가족생활 양립의 어려움 정도

5. 생활습관, 가족관계 및 정신건강

□ 생활습관

【기본 팁 1】

- 생활습관 관련 항목은 조사표의 각 문항에 명시된 기간으로 조사되었다. 생활습관에서는 흡연량, 음주량 및 음주로 인한 일상생활 지장 여부 및 음주에 대한 인식 등을 조사하였다.

【기본 팁 2】

- 16차 연도에는 15차 연도에 일시 삭제한 ‘문5) 실내공간에서 하루 타인의 담배연기를 맡은 시간정도’, ‘문5-1) 실내공간에서 하루 타인의 담배연기를 맡은 시간’, ‘문7) 출산 경험 여부’ 문항을 복원하였다.
- 14차 연도부터 음주인식에 관한 CAGE 변수(p1305_5, p1305_6, p1305_7, p1305_8)를 삭제하였다.
- 7차 연도부터 ‘문1)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피운 담배의 양’, ‘문2) 처음으로 담배 한 대를 다 피운 시기’, ‘문3) 총 흡연기간 - 년, 개월’ 문항은 신규가구원에게만 질문하였다. 원가구원의 경우에는 6차 연도 이전의 응답값과 7차 연도의 ‘문4) 현재 담배를 피우는지 여부’ 문항의 응답값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구할 수 있다.
- 6차 연도 이전에는 ‘문1)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피운 담배의 양’ 문항에 ‘① 5갑 미만’, ‘② 5갑 이상’이라고 응답한 경우에만 ‘문4) 현재 담배를 피우는지 여부’ 문항을 질문하였지만, 7차 연도부터는 ‘문1)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피운 담배의 양’ 문항을 신규가구원에게만 질문하기 때문에 ‘문4) 현재 담배를 피우는지 여부’ 문항의 보기를 ‘① 피움’, ‘② 피우지 않음’으로 변경하고 모든 가구원용 대상자에게 질문하였다.
- 6차 연도 이전에는 ‘문1)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피운 담배의 양’ 문항에 ‘① 5갑 미만’, ‘② 5갑 이상’이라고 응답한 경우에만 ‘문4-1) 하루 평균 흡연량’ 문항을 질문하였지만, 7차 연도부터는 ‘문1)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피운 담배의 양’ 문항을 신규가구원에게만 질문하기 때문에 ‘문4) 현재 담배를 피우는지 여부’ 문항에 ‘① 피움’이라고 응답한 경우 ‘문4-1) 하루 평균 흡연량’ 문항을 질문하였다.
- 4차 연도부터 ‘음주횟수’ 문항의 보기가 ‘① 주 1회 이하’, ‘② 주 2~3회’, ‘③ 주 4회 이상’, ‘④ 전혀 마시지 않는다’에서 ‘① 월 1회 이하’, ‘② 월 2~4회’, ‘③ 주 2~3회’, ‘④

주 4회 이상, '⑤ 전혀 마시지 않는다'로 변경되었다.

【기본 팁 3】

- 4차 연도부터 세계보건기구의 AUDIT(Alcohol Use Disorder Identification Test) 척도를 사용하여 문제음주와 알코올 의존에 대한 질문을 추가하였다. AUDIT 척도는 1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어 민감도와 특이성에서 적절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많은 연구에서 활용되는 자기보고용 알코올 남용 및 의존 평가척도이다. AUDIT 척도는 총 1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난 1년간 개인이 경험한 음주의 빈도와 양, 알코올 의존증세, 음주와 관련된 문제의 세 영역으로 나누어 측정되고 있다(해로운 음주에 대한 3문항, 알코올 의존에 관한 3문항, 위험한 음주에 관한 4문항)(최은진 외, 2006).
 - 해로운 음주행동 영역: 음주의 빈도, 음주량, 고위험 음주의 빈도
 - 알코올 의존 영역: 음주에 대한 통제력 상실, 음주에 대한 증대된 동기, 해장술
 - 위험한 음주 영역: 음주 후 후회감, 취중의 일을 기억 못함, 음주관련 상해, 음주관련 문제경험

[참고문헌]

최은진 외 (2006). 국민건강영양조사 제3기(2005): 성인보건의식 행태.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Babor, T. F., Higgins-Biddle, J. C., Saunders, J. B., & Monteiro, M. G. (2001). The Alcohol Use Disorders Identification Test: Guidelines for Use in Primary Care.(2nd Ed.). WHO.

【기본 팁 4】

- 음주인식 4개 문항(술을 줄여야 한다고 느낀 경험, 술로 인해 비난받는 것을 귀찮아하는 느낌, 술 마시는 것에 대한 죄책감, 숙취 제거를 위해 아침에 술을 마신 경험)은 CAGE(Cut-down, Annoyed, Guilty-feeling, Eye-opening) 음주의존도 척도를 번안한 것이다. 해당 문항들은 AUDIT 척도의 문항과 일부 중복되어 14차 연도부터 삭제하였다.

[참고문헌]

남정자 외 (1995). 한국인의 보건의식행태-1995 연도 국민건강 및 보건의식 행태조사. 한국사회보건의연구원 연구보고서.

Mayfield, D., McLeod, G., & Hall, P. (1974). The CAGE questionnaire: validation of a new alcoholism screening instrument. *The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Ewing, John A. Detecting alcoholism: the CAGE questionnaire. *JAMA* 252.14 (1984): 1905-1907.

【변수 활용】

□ AUDIT 변수의 활용

○ 10문항을 다음과 같이 코딩 변경한다.

원칙도(AUDIT) 구분		변수명	0점	1점	2점	3점	4점
해로운 음주행동	음주의 빈도	p1805_2	⑤	①	②	③	④
	음주량	p1805_3	①	②	③	④	⑤
	고위험 음주의 빈도	p1805_4aq1	①	②	③	④	⑤
알코올 의존	음주에 대한 통제력 상실	p1805_4aq2	①	②	③	④	⑤
	음주에 대한 증대된 동기	p1805_4aq3	①	②	③	④	⑤
	해장술	p1805_4aq4	①	②	③	④	⑤
위험한 음주	음주 후 후회감	p1805_4aq5	①	②	③	④	⑤
	취중의 일을 기억 못함	p1805_4aq6	①	②	③	④	⑤
	음주관련 상해	p1805_4aq7	①	-	②	-	③
	음주관련 문제경험	p1805_4aq8	①	-	②	-	③

○ 코딩 변경한 10개 변수의 값을 합하여, 총점이 높을수록 위험하고 해로운 음주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할 수 있다.

○ 세계보건기구의 AUDIT 점수별 평가방법은 아래와 같다.

- 8점 이상을 알코올에 대한 의존성이 있고, 위험하고 해로운 음주라고 평가한다.
그러나 평균 체중과 신진대사 등에 따라서 알코올의 효과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여성이나 64세 이상의 노인은 7점을 cut-off point로 사용해도 무방하다.

○ AUDIT를 사용한 다른 조사를 바탕으로 했을 때 점수별 평가 방법은 다음과 같다.

- 8점에서 15점 사이의 점수의 사람은 위험한 음주를 줄이기 위한 간단한 상담이 필요
- 16점에서 19점 사이의 점수의 사람은 대략적인 상담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
- 20점 이상은 알코올 의존에 대한 진단적인 평가를 넘어선 명확한 치료가 필요

□ 정신건강

【기본 팁 1】

- 정신건강 관련 문항은 우울 척도와 자아존중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우울 척도는 CESD-11을 활용하였다. 8차 연도까지 우울 문항의 응답값은 원척도인 CESD-11과 범주는 동일하나 하위범주인 횡수가 1일씩 많은 오류가 있어 이를 원척도와 동일하게 수정하였다. 따라서 9차 연도부터 ‘우울’ 문항의 보기가 ‘① 극히 드물다(1주일에 1일 이하)’, ‘② 가끔 있었다(일주일에 2~3일간)’, ‘③ 종종 있었다(일주일에 4~5일간)’, ‘④ 대부분 그랬다(일주일에 6일 이상)’에서 ‘① 극히 드물다(1주일에 1일 미만)’, ‘② 가끔 있었다(일주일에 1~2일간)’, ‘③ 종종 있었다(일주일에 3~4일간)’, ‘④ 대부분 그랬다(일주일에 5일 이상)’로 변경되었다.
- 자아존중감 척도는 Rosenberg Self-Esteem Scale을 활용하였다. 우울척도와 자아존중감은 조사시점에 차이가 있다. 우울 척도는 조사시점 기준 지난 1주일간의 심리상태에 대해 질문하였으며, 자아존중감 척도는 조사시점 현재일을 기준으로 하였다.

[참고문헌]

Kohout, Frank J., Berkman, Lisa F., Evans, Denis A., & Cornoni-Huntley, Joan. (1993). “Two Shorter Forms of the CES-D Depression Symptoms Index”. *Journal of Aging and Health*, 5(2), 179-193.

【기본 팁 2】

12차 연도부터 주관적 행복감(subjective well-being)을 묻는 문항을 추가하였다. 모든 가구원용 대상자에 대해 조사일 현재 기준으로 밑(0: 삶에서 가능한 최악의 상태)에서 꼭대기(10: 삶에서 가능한 최선의 상태)까지 숫자가 매겨진 사다리를 생각하고, 지금 현재 사다리의 몇 번째 칸에 있다고 느끼는지를 질문하였다(p1805 12aq1).

【변수 활용】

□ 우울에 대한 인식 변수의 활용

○ 우울에 대한 인식 11개 변수를 다음과 같이 코딩 변경한다.

변수명	0점	1점	2점	3점
p1805_9, p1805_11, p1805_12, p1805_13, p1805_14, p1805_16, p1805_17, p1805_18, p1805_19	①	②	③	④
p1805_10, p1805_15	④	③	②	①

○ 코딩 변경한 11개 변수를 아래와 같이 계산한다.

$$- \text{우울에 대한 인식} = (p1805_9 + p1805_10 + p1805_11 + p1805_12 + p1805_13 + p1805_14 + p1805_15 + p1805_16 + p1805_17 + p1805_18 + p1805_19) \times (20/11)$$

- 총점을 사용하는 경우 20/11로 곱하지 않는다.
- 계산된 값이 높을수록 우울감이 높다고 평가할 수 있다.
- 우울증 여부 진단 : 계산된 값이 16보다 높으면 우울증을 의심할 수 있다.

□ 자아존중감에 대한 인식 변수의 활용

○ 자아존중감에 대한 인식 10개 변수를 다음과 같이 코딩 변경한다.

변수명	1점	2점	3점	4점
p1805_20, p1805_21, p1805_23, p1805_25, p1805_26	①	②	③	④
p1805_22, p1805_24, p1805_27, p1805_28, p1805_29	④	③	②	①

○ 코딩 변경한 10개 변수를 아래와 같이 계산한다.

$$- \text{자아존중감에 대한 인식} = (p1805_20 + p1805_21 + p1805_22 + p1805_23 + p1805_24 + p1805_25 + p1805_26 + p1805_27 + p1805_28 + p1805_29) / 10$$

- 총점을 사용하는 경우 10으로 나누지 않는다.
-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다고 평가할 수 있다.

□ 부부관계

【기본 팁】

- 부부관계 관련 문항은 3년에 한 번씩 조사되도록 설계되어 1차 연도에 조사된 후 4차 연도에 다시 조사되었으나, 부부간 발생하는 가정폭력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바 4차 연도부터 매년 조사하였다. 1차 연도에서는 1년간의 부부갈등 유형에 대해 조사가구원과 배우자를 따로 조사한 데 반해, 4차 연도부터는 배우자의 갈등 유형에 대해서만 조사하였다. 또한 언어적 폭력, 폭력위협, 직접적 폭력 행사 등의 3가지 유형으로 질문을 축소하여 조사하였다.

□ 가족관계 만족도

【기본 팁】

- 가족관계 만족도를 묻는 문항은 조사일 현재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가족생활, 배우자, 자녀, 자녀들의 형제자매 관계에 대한 만족도를 7점척도로 질문하였다. 가족관계 만족도에서의 가족개념은 혈족을 중심으로 하는 질문으로 가구원의 개념과 일치하지 않는다. 따라서 1촌 이내의 직계혈족은 가구구성원이 아니더라도 가족에 포함해 응답하도록 한다.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하여 8차 연도까지는 직계혈족 1촌이 없는 경우에만 ‘비해당’으로 응답하였으나, 9차 연도부터는 독신가구이면서 1촌 이내의 직계혈족이 없는 경우에만 ‘비해당’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 자살

【기본 팁 1】

- 7차 연도부터 신규가구원에게만 지금까지 자살하는 것에 대해 생각한 적이 있는지, 있다면 처음으로 생각한 나이와 마지막으로 생각한 나이가 언제인지를 질문하였다(p1705_6aq1~p1705_6aq9). 원가구원의 경우에는 조사일 현재를 기준으로 지난 한 해 동안 자살하는 것에 대해 생각한 적이 있는지(p1705_7aq1)를 질문하였다. 자살 계획(p1705_7aq2), 자살 시도(p1705_7aq3)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질문하였다.
- 6차 연도부터 모든 가구원용 대상자에 대해 지금까지 자살하는 것에 대해 생각한 적이 있는지, 있다면 처음으로 생각한 나이와 마지막으로 생각한 나이가 언제인지를 질문하였다. 자살 계획, 자살 시도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질문하였다.

【기본 팁 2】

- 15, 16, 17차 연도는 COVID-19의 영향으로, 조사 시간의 단축 및 피조사원들의 자살과 관련한 심리적 불안을 최대한 야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문15-1) 자살을 처음/마지막으로 생각한 때’, ‘문16) 자살계획 여부’ ‘문16-1) 자살을 처음/마지막으로 계획한 때’, ‘문17) 자살 시도 여부’, ‘문17-1) 자살을 처음/마지막으로 시도한 때’, ‘문19) 지난 한 해 동안 자살을 계획한 적이 있는지 여부’, ‘문20) 지난 한 해 동안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는지 여부’ 문항을 일시적으로 삭제하였다.
- 18차 연도에는 15차 연도에 일시 삭제한 ‘문15-1) 처음/마지막 자살 생각’, ‘문16) 자살 계획 여부’, ‘문16-1) 처음/마지막 자살 계획’, ‘문17) 자살 시도 여부’, ‘문17-1) 처음/마지막 자살 시도’, ‘문19) 지난 한 해 자살 계획’, ‘문20) 지난 한 해 자살 시도’ 문항을 복원하였다.

6. 교육

【기본 팁】

Koweps에서 교육은 3차년도에 추가되었으며 신규가구원만 해당 문항을 조사하고 있다.

【변수 활용 시 유의점】

- 모름/무응답=9 또는 99 또는 9999으로 표기함
- 15세 이상인데 고등학교를 휴학한 경우는 ‘고등학교 중퇴, 졸업’으로 응답함.
- 고등학교 유형 및 대학 전공 계열은 응답자가 학교를 다니던 당시의 기준으로 조사함.
 - 예를 들면, 다니던 당시 실업계였으나 현재 인문계로 바뀌었다더라도 실업계로 조사함.
 - 대학교 전공계열은 학교를 다니던 당시의 학과가 현재 없어졌거나 변화하였다더라도 당시의 기준으로 조사함.
- 검정고시는 고등학교 소재지 metro 코드에 검정고시로 표시함.

7. 개인사

【기본 팁】

Koweps에서 개인사는 첫해년도부터 조사하였으나 2차년도 이후에는 신규가구원만 해당 문항을 조사하고 있다.

【변수 활용 시 유의점】

- 모름/무응답=9 또는 99 또는 9999으로 표기함
- 직장 경력은 만 15세 이후, 일주일에 평균 18 이상씩 연속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만 응답함.
- 직장경력(np1806_4 ~ np1806_24)에서 같은 직장에서 고용형태만 바뀐 경우는 분리하지 않았으며, 고용형태가 바뀌었을 경우 마지막 형태만 응답함.
- 직장변동이 없었던 경우는 첫직장(np1806_4~np1806_6)과 최근직장(np1806_7~np1806_9)을 중복하여 작성함.
 - 단, 직장변동이 있었던 경우는 첫직장(np1806_4~np1806_6)에 그에 대한 내용을 작성하고, 최근직장(np1806_7~np1806_9)에는 2022년 12월 31일로부터 가장 최근 직장경력을 작성함.
- 2022년 10월 이후 취업해서 12월까지 계속 일을 한 경우는 직장경력이 3개월 미만이라도 최근일자리(np1806_7~np1806_9)에 기록함.
- 아동기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경험의 나이에서 부모님 두 분 다 돌아가신 경우 먼저 돌아가신 분을 기준으로 작성함.
- 부모님 직업에는 가장 오래 종사한 직업을 기준으로 조사함

- 부모가 무급가족종사자의 경우에도 직업으로 선정하여 응답함.
- 부모로부터의 증여에는 결혼할 때 받은 부동산(주택마련자금 또는 전세보증금 등), 자동차, 사업자금 등이 포함됨.
 - 재산증식에 도움이 될 만한 비정기적 증여를 말하며, 정기적으로 받는 사적이전소득은 포함되지 않음. (예. 부모님이 보내주시는 쌀 또는 반찬, 소액의 용돈 등)
- 3차년도에 다문화가정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결혼이나 근로 등의 사유로 외국에서 한국으로 이주했는지 여부를 묻는 문항을 추가하였음.
- 개인사는 2차년도부터 신규가구원만 조사하였으므로 변수명이 np로 시작함.
 - 첫해년도에는 모든 가구원에게 조사하였으므로 첫해년도 변수명만 p로 시작하며 2차년도부터 np로 수정됨.
 - 결합데이터에는 변수명이 np로 설정되어 있음.
 - 그러나 마지막 문항인 한국으로의 이주 여부(p1806_3aq1)만 변수명이 p로 시작함에 유의.

제4절 장애인 부가조사

1. 조사표본

- Koweps 3차 연도 장애인 부가조사는 2차 연도 패널 표본가구 중 지역별, 장애유형별로 층화 계층 추출 방식에 의해 총 1,000명을 표본 추출하였다. 3차 연도 장애유형별 층화 계층 표본추출방식은 일단 지체 장애와 비등록 장애를 제외한 나머지 장애유형을 모두 표본으로 배분하고, 나머지를 지체장애와 비등록 장애에 비례 배분하는 방식으로 표본선택이 이루어 졌다. 장애유형별 분포 상에서 지체장애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표본추출방식을 사용하였다. 그래서 지체장애인, 비지체장애인, 비등록장애인에 따라 표본추출 확률이 다르다.
- Koweps 6차 연도 장애인 부가조사는 3차 연도 장애인 부가조사에서 조사완료된 사람 중 패널에서 탈락된 자를 제외한 총 729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 Koweps 9차 연도 장애인 부가조사는 3,6차 연도 장애인 부가조사에서 한 번이라도 응답한 사람(610명)과 전 연도(8차 연도) 복지패널 조사의 15세 미만 장애인 가구원 전원(14명)을 포함하여 총 624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 Koweps 12차 연도 장애인 부가조사는 3차 연도, 6차 연도, 9차 연도 장애인 부가조사에서 한 번이라도 조사 완료된 사람(502명) 뿐만 아니라, 11차 연도 복지 패널 조사 대상 중 이전에 장애인 부가조사의 조사대상이 아니었던 장애인 가구원 전원(866명)을 포함하여, 총 1,368명이었다.
- Koweps 15차 연도 장애인 부가조사는 12차 연도 장애인 부가조사에서 조사완료된 사람 중 패널에서 탈락된 자를 제외한 총 1,066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 Koweps 18차 연도 장애인 부가조사는 17차에 조사 완료된 가구원을 기준으로 장애가 있는 가구원(등록 장애인, 비등록 장애인 포함) 총 1,576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2. 가중치 및 기본정보

【가중치 변수】

내용		변수명	
원표본	횡단면 가중치	da18_wg_c	da18_ws_c
통합표본1 (원표본 + 7차 추가)	횡단면 가중치	da18_wg_c_all	da18_ws_c_all
통합표본2 (원표본 + 7차 추가 + 17차 추가)	횡단면 가중치	da18_wg_c_n_all	da18_ws_c_n_all

- 18차 연도 장애인 부가조사의 가중치는 원표본 횡단면 가중치와 통합표본1(원표본 + 7차 추가) 횡단면 가중치, 통합표본2(원표본 + 7차 추가 + 17차 추가) 횡단면 가중치로 구분하여 제공된다.

【기본정보 변수】

구분	세부항목	단위	변수명	비고
가구구분	균등화소득에 따른 가구 구분	1. 일반가구 2. 저소득층 가구	h18_hc	-
가구원번호	조사대상의 가구원 번호	-	da18_fnum	-
최종조사결과	최종조사결과 확인	1. 완료 2. 미완	da18_cp	-

- h18_hc는 가구균등화된 경상소득을 기준으로 중위소득 60% 미만이면 저소득층 가구(2), 그렇지 않으면 일반가구(1)이다.
- 조사대상의 가구원 번호(da18_fnum)는 가구용 조사의 해당 가구원의 가구원 번호와 일치한다.
- 최종조사결과 확인(da18_cp)은 장애인 부가조사의 조사결과에 대한 변수이다. 완료되었으면 1, 미완인 경우에는 2로 코딩하였다. 따라서, 조사가 완료된 사례만을 분석하고자 하는 경우 da18_cp 변수의 값이 2인 사례는 제외하고 분석한다.

【기본 팁 1】

- 가구용 조사정보, 가구원용 조사정보, 장애인 부가조사 정보를 모두 활용하고 싶을 경우 머지데이터 파일 “koweps_hpda”를 활용할 것을 권한다. “koweps_hpda”는 한국복지패널에서 조사된 모든 내용을 가구원별로 제공하는 데이터이다. 즉, 가구용 조사에서 조사된 모든 가구원의 가구일반사항, 건강 및 의료 A, 경제활동상태, 사회보험가입 및 퇴직금제를 restructure하였을 뿐만 아니라 가구원이 속한 가구의 가구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여기에 가구원용 조사의 정보와 장애인 부가조사의 정보가 결합되어 있다. 이 때, 가구원 조사는 만 15세 이상(중고등학생 제외) 가구원만을 조사하기 때문에, 조사대상자가 만 15세 미만이거나 중고등학생인 경우 가구정보와 장애인 부가조사의 정보는 있으나 가구원 정보는 없음에 주의해야 한다. 그리고, 3,6,9차 장애인 부가조사의 경우, 만 15세 이상(중고등학생 제외)의 장애인이지만, 장애인 부가조사의 표본으로 선정되지 않은 경우 가구정보와 가구원 정보는 있으나 장애인 부가조사의 정보는 없을 수 있다.

【기본 팁 2】

- 장애인 부가조사에서 조사된 장애인의 장애유형과 장애등급을 알고 싶은 경우, 가구용 조사의 가구일반사항 정보를 활용하거나, 머지 데이터 “koweps_hpda”를 활용할 수 있다.
- 가구용 조사: 장애유형 변수(h1801_8, h1801_20, h1801_32, h1801_44, h1801_56, h1801_68, h1801_80, h1801_92, h1801_104), 장애등급 변수(h1801_9, h1801_21, h1801_33, h1801_45, h1801_57, h1801_69, h1801_81, h1801_93, h1801_105)
- 머지 데이터 “koweps_hpda”: 장애유형 변수(h18_g8), 장애등급 변수(h18_g9)

3. (공통1) 장애 원인 및 상황

【기본 팁 1】

- 장애인 부가조사의 기준 응답시점은 가구용, 가구원용(전 연도 말)과 달리, 조사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기본 팁 2】

- 6차 연도부터 ‘장애의 현재 상태(da06_4)’는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응답을 받았다. 3차 연도에는 ‘장애의 현재 상태’를 객관적으로 응답하도록 해 객관적인 장애등급 및 장애유형의 변화에 근거하여 호전, 고착, 악화 및 진행을 판단하였다. 예를 들어 장애등급이 낮아지거나 중복장애가 단일장애로 바뀐 경우에 호전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반면 6차 연도부터는 객관적인 장애등급 및 장애유형의 변화와 관계없이 응답자 본인이 호전, 고착, 악화 및 진행을 주관적으로 판단하였다.
- 6차 연도부터 ‘외출을 거의 하지 않는 주된 이유’(da06_47)의 보기에서 ‘④ 시간이 없어서’를 ‘④ 본인이 시간이 없어서’와 ‘⑨ 도움제공자가 시간이 없어서’로 구분하였다.

【기본 팁 3】

- 15차 연도부터 장애로 인해 차별을 느끼는 정도(da15_15aq1) 문항과 우리나라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 정도(da15_15aq2) 문항을 추가하였다. 개인이 느끼는 장애로 인한 차별 정도와 우리나라 전반의 차별 인식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하였다.

【기본 팁 4】

- 18차 연도부터 ‘학대를 받은 경험(da18_18aq1~4)’이 추가되었다. 장애인권리협약(CRPD) 16조(착취, 폭력 및 학대로부터의 자유)에 의거하여 학대 및 폭력을 당한 경험에 대한 조사 필요성에 따라 추가하였으며, 척도는 신체적 장애가 있는 개인의 학대 경험을 사정하는 도구인 Abuse Assessment Screen-Disability(AAS-D)를 사용하였다. AAS-D는 신체적 학대, 성적 학대, 보조기기 이용 관련 학대, 도움 거부 관련 학대를 포함한 총 4가지 영역에 대한 학대 경험을 측정한다.

[참고문헌]

McFarlane, J., Hughes, R. B., Nosek, M. A., Groff, J. Y., Swedlend, N., & Dolan Mullen, P. (2001). Abuse assessment screen-disability (AAS-D): measuring frequency, type, and perpetrator of abuse toward women with physical disabilities. *Journal of women's health & gender-based medicine*, 10(9), 861-866.

4. (공통2) 일상 생활

【기본 팁 1】

- 주로 도와주는 사람의 가구원 번호(da12_50, da12_52, da12_54)는 주로 도와주는 사람(da12_49, da12_51, da12_53)이 가구원일 경우에는 가구용 조사표의 가구원번호와 일치하게 기재하도록 하였으며, 가구원이 아닐 경우에는 SYSMIS=.로 처리하였다. 따라서 도움을 주는 가구원에 관한 정보는 가구 ID와 가구원번호를 활용하여 가구용 조사표와 가구원용 조사표에서 얻을 수 있다.

【기본 팁 2】

- 장애인 부가조사에서 기본적 일상생활 수행능력(ADL: Activities of Daily Living)과 수단적 일상생활 수행능력(IADL: 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활용되고 있는 척도이다. 이 중 기본적 일상생활수행능력은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보다 중증의 상태를 측정하는 것이며,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은 지역 사회 생활능력에 초점을 둔다. 기본적 일상생활 수행능력은 이상없음, 경증, 중증으로 범주화할 수 있으며, 수단적 일상생활 수행능력은 이상없음, 경증, 중증, 최종중으로 범주화할 수 있다.

[참고문헌] 이봉주 외(2008). 사회서비스 수요·공급실태 정밀조사 연구. 기획예산처·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기본 팁 3】

- 사회적 지지 척도(6차 연도부터 추가)는 Zimet et al.(1988)이 개발한 다면적 척도(MSPSS, Multidimensional Scale of Perceived Social Support)를 최희수(1999)가 재구성한 것을 사용하였다. MSPSS는 세 가지 체계 즉 가족, 친구, 의미 있는 타인으로

부터 클라이언트가 지각한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원 MSPSS는 12 문항으로 되어 있으나 최희수(1999)가 10개 항목으로 설문지를 재구성하였다. 이후 백은령(2003), 김형수·김용섭(2009), 윤민석(2010) 등의 연구에서 10개 항목으로 재구성한 것을 사용하였다. 10개 항목(da06_6aq1~da06_6aq10)을 합산한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가 높은 것으로 판단한다.

[참고문헌]

최희수(1999). 정신분열증 환자의 직업재활 성과의 예측 요인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여자대학교

Zimet, G. D., Dahlem, N. W., Zimet, S. G. & Farley, G. K.(1988). The Multidimensional Scale of Perceived Social Support.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52, 30-41.

【기본 팁 4】

- 18차 연도부터는 ‘삶을 위해 필요한 제도(지원)나 서비스 필요 및 충분 정도 (da18_18aq5~30)’가 추가되었다. 장애인의 기본적인 인권 및 자유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전반적인 제도(지원)나 서비스가 얼마나 필요하며, 기존 사회에서 얼마나 충분히 보장하고 있는지 물을 필요성에 의해 추가되었다. 항목은 보건사회연구원 『2020년 장애인 실태조사』의 ‘사회 및 국가에 대한 요구사항’의 문항을 바탕으로 ‘사회 참여 보장’, ‘자기의사결정권 행사 지원’, ‘학대 방지’, ‘사회적 차별 금지’ 문항을 추가하여 구성하였다. 따라서 총 13개 항목에 대해서 필요정도(4점 척도)와 충분정도(4점 척도)를 묻고 있으며, 세부 항목은 다음과 같다.
- 소득보장, 의료보장(신체건강), 의료보장(정신건강), 고용보장, 주거보장, 이동권 보장, 의사소통과 정보접근 참여 보장, 보육 교육 보장, 사회 참여 보장, 문화여가생활 및 체육활동 보장, 자기의사결정권 행사 지원(치료, 약물, 입원 등), 학대 방지, 사회적 차별 금지

[참고문헌]

김성희 외(2020). 2020년 장애인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보건사회연구원

【기본 팁 5】

- 15차 연도부터는 활동보조서비스 이용 금액 부담 희망 비율(da12_58)을 설문문항에 석 삭제하였다.

- 15차 연도부터는 ‘활동보조인’(da18_6aq11)을 ‘활동지원사’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는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의한 명칭 변경에 따른 것이다.
- 15차부터는 수단적 일상생활 수행능력(da15_71~80) 문항에 있어, 연령에 따라 응답을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한 문항이 있어, 보기 중 ‘㉠비해당’을 추가하였다.
- 9차 연도부터 ‘도와주는 사람(1~3순위)’(da09_49, da09_51, da09_53)의 보기에서 ‘㉠요양보호사’와 ‘㉡장애아동 돌보미’를 추가하였다.
- 9차 연도부터 ‘활동보조서비스’는 ‘활동지원서비스’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는 기존의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이 2011년 10월에 장애인활동지원제도로 대체된 것에 따른 것이다.
- 9차 연도부터 ‘지난 1개월 동안 일상생활에서의 도움 정도, 물질적 지원 및 보살핌 횟수’에 ‘㉠ 요양보호사’(da09_9aq1, da09_9aq2, da09_9aq3)과 ‘㉡ 장애 아동 돌보미’(da09_9aq4, da09_9aq5, da09_9aq6)를 추가하였다.
- 6차 연도부터 사회적 지지 척도(da06_6aq1 ~ da06_6aq10)가 추가되었다.
- 6차 연도부터 ‘지난 1개월 동안 일상생활에서의 도움 정도, 물질적 지원 및 보살핌 횟수’에 ‘㉢ 활동보조인’(da06_6aq11, da06_6aq12, da06_6aq13)을 추가하였다.

【변수 활용】

- 기본적 일상생활 수행능력(K-ADL)은 다음과 같이 범주화할 수 있다.
 - 이상없음: 12개 항목이 모두 완전자립인 경우
 - 경증: 12개 항목 중 1개의 부분도움에서 4개의 부분도움이나 2개의 완전도움이 있는 경우
 - 중증: 경증을 초과한 항목 수의 제한이 있는 경우
 - 12개 항목의 값을 모두 합하여 12는 이상없음, 13~16은 경증, 17~36은 중증으로 범주화한다.
- 수단적 일상생활 수행능력(K-IADL)은 다음과 같이 범주화할 수 있다.
 - 이상없음: 10개 항목이 모두 완전자립인 경우
 - 경증: 10개 항목 중 1개의 부분도움에서 2개의 부분도움이나 1개의 완전도움이 있는 경우

- 중증: 경증을 초과한 항목 수부터 10개 이상의 부분도움이나 5개의 완전도움이 있는 경우
- 최중증: 중증을 초과한 항목수의 제한이 있는 경우
- 10개 항목의 값을 모두 합하여 10은 이상없음, 11~12는 경증, 13~20은 중증, 21~30은 최중증으로 범주화한다.

5. (개별1) 미취학 아동 설문(만 0세 - 초등학교 입학 이전)

【기본 팁 1】

- 미취학 아동의 심리상태(우울/불안)는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지난 6개월간의 경험을 조사하였다. 만 4세 이상 미취학 아동의 보호자만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아동이 만 3세 이하인 경우에는 응답하지 않도록 하였다. 척도는 K-CBCL 아동·청소년 행동평가 척도 중 문제행동증후군 척도의 우울/불안 14개 항목을 사용하였다. K-CBCL은 Achenbach & Edelbrock(1983)가 개발한 CBCL을 오경자 등(1998)이 번안한 척도로 4~17세 아동을 대상으로 표준화되었다. 14개 항목(da03_111~da03_124)을 합산한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불안 정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한다.

[참고문헌] 오경자, 이해련, 홍강의, 하은혜(1998). K-CBCL 아동청소년 행동평가 척도. 서울: 중앙적성연구소

【기본 팁 2】

- 장애 등으로 인해 초등학교에 입학할 연령(이상 포함)이 되었음에도 입학하지 못한 경우는 개별1(미취학 아동 설문) 파트에 응답하지 않고 개별2(학생 설문) 파트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기본 팁 3】

- 18차 연도부터 ‘장애아동 관련 서비스 필요여부 및 이용 여부 문항(da15_125~152, da15_12aq1, da15_12aq2)’이 삭제되었다.
- 코로나19로 인하여 조사시간 단축을 위해 15차 연도에 한해서 장애아동관련서비스

필요여부(da12_125, da12_127, da12_129, da12_131, da12_133, da12_135, da12_137, da12_139, da12_141, da12_143, da12_145, da12_147, da12_149, da12_151, da12_12aq1)에 대해서는 설문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 발달재활서비스 이용금액 부담 희망 비율(da12_155)는 15차 연도부터 삭제하였다.
- 9차 연도부터 ‘장애아동재활치료서비스’는 ‘발달재활서비스’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는 2012년 9월 제정·시행된 장애인아동복지지원법에 따른 것이다.
- 8차 연도부터 가구용조사표의 보육시설 형태 명칭을 변경하였다. 장애아동이 다니고 있는 보육시설의 유형(da08_157)에서 놀이방은 가정어린이집으로 ‘어린이집’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놀이방’을 삭제하였다. 또한 어린이집이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과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으로 이원화 되어 보기에 이를 반영하였다. 기존의 보기문항 ①일반보육시설(놀이방, 어린이집, 유치원), ②일반보육시설(놀이방, 어린이집, 유치원)내 특수반, ③장애인전담 보육시설 혹은 유치원 과정 특수학교(특수학교 유치부)는 9차 연도부터 ①일반 보육시설(어린이집, 유치원), ②일반 보육시설(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유치원)내 특수반, ③장애인전담 보육시설(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 과정 특수학교(특수학교 유치부)
- 6차 연도에 ‘지역혁신사업’을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으로 변경하였다.

【변수 활용】

□ 우울/불안 정도는 변수값을 리코딩한 후 총점을 계산한다.

○ 변수값 리코딩: 1 ~ 3 → 0 ~ 2

○ 우울 및 불안 = da18_111 + da18_112 + da18_113 + da18_114 + da18_115 + da18_116 + da18_117 + da18_118 + da18_119 + da18_120 + da18_121 + da18_122 + da18_123 + da18_124

○ 총점이 높을수록 우울/불안이 높다.

6. (개별2) 학생 설문(초등학생 - 고등학생 설문)

【기본 팁 1】

- 장애로 인해 학교에 입학할 연령에 되었음에도 입학하지 못한 경우와 학교에 재학 중이어야 할 연령임에도 학교를 다니지 않고 있는 경우 본 파트(개별2)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또한 만 18~20세이면서 고등학생인 경우에도 본 파트(개별2)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기본 팁 2】

- 학생의 심리상태(우울/불안)는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지난 6개월간의 경험을 조사하였다. 척도는 K-CBCL 아동·청소년 행동평가 척도 중 문제행동증후군 척도의 우울/불안 14개 항목을 사용하였다. K-CBCL은 Achenbach & Edelbrock(1983)가 개발한 CBCL을 오경자 등(1998)이 번안한 척도로 4~17세 아동을 대상으로 표준화되었다. 14개 항목(da03_162~da03_175)을 합산한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불안 정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한다.

[참고문헌] 오경자, 이해련, 홍강의, 하은혜(1998). K-CBCL 아동청소년 행동평가 척도. 서울: 중앙적성연구소

【기본 팁 3】

- 학생의 우울척도는 CESD-11을 활용하였다. 우울척도는 조사시점에서 지난 1주일간의 심리상태에 대해 질문하였다.

【기본 팁 4】

- 18차 연도부터 ‘장애학생 관련 서비스 필요여부 및 이용여부 문항(da15_176~209, da15_12aq3, da15_12aq4)’이 삭제되었다.
- 코로나19로 인하여 조사시간 단축을 위해 15차 연도에 한해서 장애학생관련서비스 필요여부(da12_176, da12_178, da12_180, da12_182, da12_184, da12_186, da12_188, da12_190, da12_192, da12_194, da12_196, da12_198, da12_200, da12_202, da12_204, da12_206, da12_208, da12_12aq3)에 대해서는 설문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 15차 연도부터 ‘발달재활서비스 이용금액 부담 희망 비율(da12_225)’이 삭제되었다.
- 9차 연도부터 ‘장애아동재활치료서비스’는 ‘발달재활서비스’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는 2012년 9월 제정·시행된 장애인아동복지지원법에 따른 것이다.
- 6차 연도에 ‘지역혁신사업’을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으로 변경하였다.

【변수 활용】

- 우울/불안 정도(da18_162 ~ da18_175)는 변수값을 리코딩한 후 총점을 계산한다.
 - 변수값 리코딩: 1 ~ 3 → 0 ~ 2
 - 우울 및 불안 = da18_162 + da18_163 + da18_164 + da18_165 + da18_166 + da18_167 + da18_168 + da18_169 + da18_170 + da18_171 + da18_172 + da18_173 + da18_174 + da18_175
 - 총점이 높을수록 우울/불안이 높다.

- 우울척도(da18_211 ~ da18_220)의 활용
 - 1, 2, 3, 4로 되어 있는 변수 값(da18_210, da18_212, da18_213, da18_214, da18_215, da18_217, da18_218, da18_219, da18_220)을 0, 1, 2, 3으로 코딩 변경한다. 이때 da18_211, da18_216은 역코딩(4→0, 3→1, 2→2, 1→3으로 변경)한다.
 - 우울에 대한 인식 = [식욕이 없음(da18_210) + 비교적 잘 지냈다(da18_211) + 상당히 우울(da18_212) + 모든 일이 힘들게 느껴짐(da18_213) + 잠을 설침(da18_214) + 외로움(da18_215) + 불만없이 생활(da18_216) + 사람들이 차갑게 대하는 것 같은 느낌(da18_217) +마음이 슬펐다(da18_218) +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은 느낌(da18_219) + 뭐 해 나갈 엄두가 나지 않음(da18_220)] × (20/11)
 - 총점을 사용하는 경우 20/11로 곱하지 않는다.
 - 계산된 값이 높을수록 우울감이 높다고 평가할 수 있다.
 - 우울증 여부 진단: 계산된 값이 16보다 높으면 우울증을 의심할 수 있다.

7. (개별3) 성인(만 18-65세 미만) 설문

【기본 팁 1】

- 만 18~20세이면서 고등학생인 경우에는 본 파트(개별3)가 아닌 학생 설문(개별2) 파트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만 21세 이상인 경우에는 고등학생이더라도 본 파트(개별3)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기본 팁 2】

- 성인의 우울척도는 CESD-11을 활용하였다. 우울척도는 조사시점에서 지난 1주일간의 심리상태에 대해 질문하였다.

【기본 팁 3】

- 18차 연도부터 ‘성인 관련 서비스 필요여부 및 이용여부’ 중 ‘직업상담, 취업알선, 직업능력평가, 일생생활훈련, 직업준비훈련, 보호작업(da15_231~242)’과 ‘그룹홈, 장기시설보호(da15_247~250)’보기가 삭제되었다.
- 18차 연도부터 ‘성인 관련 서비스 필요여부 및 이용여부’에 ‘일상생활지원, 의사소통 지원 및 정보접근 참여 보장, 상담 서비스, 취업 관련 서비스, 직업재활 서비스, 장애인 일자리, 교육참여 지원, 사회참여 지원, 의사결정 지원, 자립생활 지원 (da18_18aq31~50)’보기가 추가되었다.
- 코로나19로 인하여 조사시간 단축을 위해 15차 연도에 한해서 성인관련서비스 필요여부(da12_231, da12_233, da12_235, da12_237, da12_239, da12_241, da12_243, da12_245, da12_247, da12_249, da12_251, da12_253, da12_255, da12_257, da12_259, da12_261)에 대해서는 설문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 근로지원인 서비스 이용금액 부담 희망 비율(da12_280) 문항은 15차 연도부터 삭제하였다.
- 현재근무처(da12_275)와 향후 희망 근무처(da12_276)의 ‘③ 정부 및 정부관련 기관’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공무원 포함) 등과 국책연구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을 의미하는데, 정부 및 정부관련 기관에서 장애인 일자리 사업으로 생긴 직업(장애인 행정 도우미, 도서관 사서가 이에 해당함)을 포함한다. ‘④ 장애인 직업재활시

설'은 장애인근로작업시설, 장애인보호작업시설, 장애인직업훈련시설,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장애인 보호·근로·표준 사업장 등을 의미하는데, 장애인 복지관에 배치되어 복지업무를 보조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⑤ 장애인 관련기관'은 장애인복지관, 장애인단체, 자립생활센터 등을 말한다. 시각장애인 안마사는 근무하는 장소에 따라서 ①~⑥까지 해당할 수 있다.

8. (개별4) 어르신(만 65세 이상) 설문

【기본 팁 1】

어르신의 우울척도는 CESD-11을 활용하였다. 우울척도는 조사시점에서 지난 1주일간의 심리상태에 대해 질문하였다.

【기본 팁 2】

- 18차 연도부터 '어르신 관련 서비스 필요여부 및 이용여부'에 '의사결정 지원 서비스(da18_18aq51~52)' 보기가 추가되었다.
- 코로나19로 인하여 조사 시간 단축을 위해 15차 연도에 한해서 어르신관련 서비스 필요여부(da12_281, da12_283, da12_285, da12_287, da12_289, da12_291, da12_293, da12_295, da12_297, da12_299, da12_301, da12_303, da12_305, da12_307)에 대해서는 설문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 노인돌봄종합 서비스와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금액 부담 희망 비율 (da12_327, da12_6aq15) 문항은 15차 연도부터 삭제하였다.
- 6차 연도부터 '노인돌봄서비스'를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서비스'로 변경하였다(da06_6aq14, da06_6aq15 추가). 노인돌봄종합서비스와 노인장기요양보험서비스는 서로 배타적이므로 문항 간 로직에 유의한다. 즉, 노인돌봄종합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서비스 문항(da06_6aq14, da06_6aq15)에 응답하지 않도록 했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문항(da06_327, da06_328)에 응답하지 않도록 했다. 둘 다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향후 이용 가능성이 있으므로 노인돌봄종합서비스와 노인장기요양보험서비스 문항에 모두 응답하도록 하였다.